

문화유산의 세계화 법제연구

강문수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보고 2014-11

문화유산의 세계화 법제연구

강 문 수



문화유산의 세계화 법제연구

Legislative study for globa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연구자 : 강문수(연구위원)

Kang, Mun-Soo

2014. 10. 31.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 약 문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일반적으로 세계화란, 특정 문화가 생성된 근원지에서 향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 각국에서 향유되어지고 또 새롭게 응용되어지는 현상을 의미
- 이러한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현대 각국은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타국에 대하여 자국 문화의 본질을 소개하고 상호 협력함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문화교류 범주가 바로 문화유산영역이라는 점을 새로이 인식
- 따라서 자국 국제문화교류의 중심적 콘텐츠로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그 보급 및 활용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상황
- 우리 정부는 2000년대 중반을 전환점으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히, 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② 국외소재 한국 문화재 환수-활용, ③ 문화유산 ODA사업, ④ 남북한 문화교류사업 등 4개 주요 범주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확대·강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
- 그러나 ① 문화유산 세계화를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문화재 보호법에 대한 지속적 정비추진, ② 문화유산의 세계화 효율성 제고를 위한 문화교류 추진 수행체계 구축, ③ 세계문화 다양성을 고려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④ 지역문화 활

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제고 등에 대한 법제도적 전개에 관한 요구는 항상 논의되고 있는 실정

-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유산의 세계화, “문화유산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문화상대주의와 다문화주의의 효율적 구현”이라 설정, 이를 위한 보다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문화 교류의 법제도적 안착방안을 모색함에 목적을 두고 위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한 입법 정책적 제언을 제시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연구목적에 상응하는 연구추진을 위하여 본 연구는, ① 문헌·법령 조사연구, ② 비교법적 연구, ③ 입법정책적 연구, ④ 전문가 회의 및 연구자문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
- 특히 연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회의 및 연구자문 실시하여 연구 성과물에 대한 정책 활용도를 제고
- 주요연구 내용으로서는 제2장에서 연구대상으로서의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의 세계화 개념을 논하고 이에 근거, 문화유산 국제문화교류의 추진체계 및 주요 사업에 관한 현황과약 및 성과 제시
- 제3장에서는 문화유산의 국제문화교류 관련 국제협약 등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개관, 이에 대한 우리나라 문화유산 국제문화교류 정책 대응방안과 주요 논의점을 소개

- 제4장에서는 현행 진행되고 있는 문화유산 국제문화교류사업의 근거 법제를 검토하고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안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하여 제5장에서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한 입법 정책적 제언 제시

Ⅲ. 연구의 주요내용

1. 문화유산 세계화를 통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 확산

- 문화유산의 세계화 개념의 정립을 위한 문화재 및 문화유산 개념 고찰
- 문화유산의 세계화 전개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정책적 노력의 전개 및 성과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 자긍심 고취
 - 국외소재 한국 문화재 환수-활용의 제고
 - 문화유산 ODA사업을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 선도국 위상 강화
 - 남북 문화교류사업 지속적 추진을 통한 민족통일 기반 마련

2. 문화유산의 세계화 관련 국제협약 및 주요국가의 관련 법제 및 운영 현황

- 유네스코(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문화유산의 세계화 과정 고찰

- 헤이그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협약 (Hagu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with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1954), 문화재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1970),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turn of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무형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등 관련 국제협약 주요내용 소개 및 대응방안 모색

3.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 분석

- 문화재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현행 우리나라 관련 법률 주요내용 검토
- 문화유산 세계화를 위한 국회제출 법률안 주요내용 검토 및 분석 등을 통한 입법 정책적 제언방안의 근거 틀 마련
 - 문화교류의 활성화 관련
 - 세계유산 잠정등재 유산 관리 및 무형문화유산 진흥 관련
 - 해외문화재 환수-활용 관련

4.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위한 입법 정책적 제언

- 문화유산 세계화를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지속적 정비추진
- 문화유산의 세계화 효율성 제고를 위한 문화교류 추진의 수행체계 구축
- 세계문화 다양성을 고려한 민관협력체계 강화
-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제고

IV. 연구의 기대효과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화유산 세계화를 위한 중점사업으로서의 4개 범주(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국외소재 한국 문화재 환수-활용, 문화유산 ODA사업, 남북한 문화교류사업) 설정 및 이의 진흥을 위한 입법 정책적 제언을 통한 문화 융성국가로서의 지위 강화
- 본 연구 성과물은 또한 향후 관련 입법사항에 대한 입법정책 자료로서 활용 기대

▶ 주제어 : 문화재, 문화유산의 세계화, 문화재보호법, 유네스코협약, 국제문화교류

Abstract

I . Background and Objective

- In general, globalization means the phenomenon that certain culture is broadly enjoyed and newly reproduced in the other countries as well as the place of origin.
- In this global process, each country is recently striving to maintain their own cultural identity and realizing the effective cultural exchange scopes are the heritage fields for making mutual cooperation and introducing their cultural essence.
- Therefore, the interests that is related to the heritages and efforts of practical uses is increased as the central contents of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steadily expands supports following four fields : ① registering the Korea's heritage to the UNESCO's World Heritage ② redeeming Korea's heritage that is stolen ago ③ the heritage ODA businesses ④ cultural exchange business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 However, there are no agreements about ① continuously improving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as the general law for globalization of heritage ② making cultural

exchange system for increasing effectiveness of heritage's globalization ③ building cooperation system between public-private sector ④ strengthening abilities of the local governments for invigorating local cultures.

- Therefore, this report defines globalization of heritage as “effective application of multiculturalism and cultural relativism” through exchange and cooperation of heritage.

II. Research Scope and Methodology

- To meet the purpose of study, this report implemented various method such as ① researching and studying legislation and literature ② comparing South Korea's law with other countries law in similar areas ③ studying legislation and policies ④ holding experts' conference.
- Especially, this report tried to reinforcing policy utilization for study's results by holding experts' conference and seeking advice on the related topic besides getting the objectivity and expertise of study.
- In chapter 2, discussing the concept of heritage's globalization as the subject of study. Not only that, grasp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presenting results about major businesses and system of heritage's international exchange.

- In chapter 3, introducing characteristics and major contents about international convention that is associated with heritage's international exchange. Also, taking a general views of South Korea's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policies.
- In chapter 4, examining the legislation that is connected with heritage's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in South Korea. In addition, deeply analyzing relevant bills which is submitted to the Assembly and presenting legislative suggestion in chapter 5.

III. Main Contents

1. Spread of the South Korea's heritage values through globalization of heritage.

- Study the concept of heritage and cultural assets for setting up concept of globalization of heritage.
- Efforts and performances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Tourism to spread out South Korea's globalization of heritage.
 - Arousing national pride by invigorating UNESCO's World Heritage registering businesses.
 - Redeeming Korea's heritage that is stolen ago and considering application plan.
 - Strengthening status of leading country about heritage' conservation and supervision through cultural assets' ODA bussinesses.

- Preparing the foundation for unification of Korea through continuous cultural exchange business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2. International convention that is associated with globalization of heritage and related legislative system of major countries.

- Study of international heritage's globalization based on UNESCO.
- Introducing major contents of international convention such as Hagu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with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1954,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1970,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turn of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and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well as searching plans for reactions.

3. Analyzing legislation of South Korea

- Reviewing major contents of current South Korea's related legislation focused on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 Making framework of legislative measures through analyzing and reviewing major contents of legislation which is submitted to the Assembly for the globalization of heritage.

- Invigorating of cultural exchange.
- Promoting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and caring for waiting heritage to register world heritage.
- Redeeming Korea's heritage that is stolen ago

4. The legislative proposal for globalization of heritage

- Continuous reorganization for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as the general law for globalization of heritage.
- Making implementing process of cultural exchange for increasing effectiveness of globalization of heritage.
- Reinforcing the cooperation system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by considering diversity of culture.
- Strengthening abilities of the local governments for invigorating local cultures.

IV. Expected Results

- Strengthening the status for cultural prosperity of the country by the suggesting legislative proposal and setting up four major businesses (registering the Korea's heritage to the UNESCO's World Heritage, redeeming Korea's heritage that is stolen ago, the heritage ODA businesses, cultural exchange

business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s a key projects for globalization of heritage.

This report's results is expected to be used as legislative resource in the future.

▶▶ Key word : Cultural assets, Globalization of heritage,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UNESCO Convention,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9
제 1 장 서 론	19
제 1 절 연구의 목적	19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제 2 장 문화유산 세계화를 통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 확산	23
제 1 절 문화유산의 세계화 개념	23
1. 문화재와 문화유산	23
2. 문화유산의 세계화	37
제 2 절 문화유산 세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전개와 운영현황	43
1. 추진 및 지원체계	43
2. 추진현황 및 성과	51
제 3 장 문화유산의 세계화 관련 국제협약 및 주요국가의 관련 법제 및 운영 현황	67
제 1 절 국제협약	67
1. 헤이그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협약	68
2.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69

3.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71
4.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에 관한 협약	72
5. 무형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한 협약	74
제 2 절 국제규범에 대한 대응방안	76
1. 1970년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78
2. 1972년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79
3. 1995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에 관한 협약	80
4. 2003년 무형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한 협약	81
제 4 장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 분석	83
제 1 절 관련 법제 현황	83
1. 문화재보호법	83
2. 한국국제교류재단법	90
3. 문화예술진흥법	91
4. 문화산업진흥기본법	92
5. 콘텐츠산업진흥법	93
6.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94
7.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95
8. 영상진흥기본법	96
9.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97
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99
1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100
제 2 절 문화유산 세계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의 전개	101
1. 문화교류 활성화 관련	102

2.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유산 관리 및 무형문화유산 진흥 관련	110
3. 남북한 문화협력 관련	117
4. 해외문화재 환수·활용 관련	118
제 3 절 중 합	120
1. 문화유산 세계화를 위한 관련 법제의 비체계성	120
2. 국회 계류법안 주요 쟁점	121
제 5 장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위한 입법 정책적 제언	131
제 1 절 문화유산 세계화를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지속적 정비추진	131
제 2 절 문화유산의 세계화 효율성 제고를 위한 문화교류사업 추진주체 일원화	133
제 3 절 세계문화 다양성을 고려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135
제 4 절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제고	137
참 고 문 헌	14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20세기 후반부터 국제사회의 현상적 요소로서 나타난 세계화(globalization)는 국가 간 지역적 경계로 인한 교류의 한계를 넘어 지식, 자본, 기술, 문화 및 인구 등의 활발한 교류의 촉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고려되어 질 수 있다. 특히 문화적 측면에 있어서는 특정 문화가 생성된 근원지에서 향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 각국에서 향유되어지고 또 새롭게 응용되어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¹⁾ 아울러 현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다양한 문화향유에 대한 각국 국민의 욕구의 증대는 이와 같은 세계화를 촉진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세계화라는 국가 간 활발한 교류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타국가내지 타민족과의 상호교류와 상호협력을 도모하여 한국문화를 세계무대에 좀 더 널리 보급 전파시키고, 타문화권의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좀 더 잘 이해함으로써 상호 간의 문화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²⁾. 이와 같은 한국문화의 세계화가 추구하는 문화상대주의와 다문화주의의 효율적 구현을 위하여 타국과의 문화교류내지 문화협력이라는 활동이 중요시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화교류란, ‘문화부문의 모든 주체들이 문화콘텐츠를 통해 타 국민과 상호 관계를 맺고, 개인차원에서는 타 문화이해와 창조적 자극을 얻고, 국가차원에서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등의 발신과 수용으로 문화적 발전을 성취하며, 전 지구적 차원에서는 문화다양성의 지속과 확산에

1) 이종열, 문화교류의 거버넌스 접근: 한류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 17권 제4호, 2007., 141면.

2) 김형민, 한국문화의 세계화 전략방안, 전북대학교 국제문화교류심포지엄 자료, 전북대학교 국제문화교류연구소, 2012., 11면.

기여하는 활동'으로 이해된다.³⁾ 즉 상호 간 문화이해의 증진과 협력(목적-세계화)을 위한 가장 효율적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대 각국에 있어 국제문화교류의 중심적 콘텐츠로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그 보급 및 활용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는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타국에 대하여 자국 문화의 본질을 소개하고 상호 협력하는 과정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교류 범주가 바로 문화유산영역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문화유산이란 개념은 20세기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종래 물질중심의 문화재 개념에서 진일보하여 비물질적 문화재 개념을 더한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이해되어지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관련 국제협약을 통하여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문화재보호법상 규정된 문화재 개념과 비교하여 볼 때 이러한 개념적 확대는 가시화 된다. 이러한 문화재 개념의 확대 화에 근거한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유산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문화상대주의와 다문화주의의 효율적 구현"이라고 설정하고 이를 위한 보다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문화교류의 법제도적 안착을 모색함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즉 그간의 국제문화교류는 다양한 문화와 문화유산 가치의 공유와 확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유산의 세계화는 국제문화교류의 활성화에 기반 하는 것이다. 연혁 적으로 우리나라는 참여정부를 전환점으로 하여 한류가 본격화된 2000년대 중반 이후 체계적인 문화유산의 국제문화교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정부는 특히 중점 사업으로서, 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② 국외소재 한국 문화재 환수·활용, ③ 문화유산 ODA사업, ④ 남북한 문화교류사업 등 4개 주요 범주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확대·강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낳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성과와는 달리 ① 문화유산 세계화를

3) 정정숙, 국제문화교류 진흥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13~14면.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지속적 정비추진, ② 문화유산의 세계화 효율성 제고를 위한 문화교류 추진 수행체계 구축, ③ 세계문화 다양성을 고려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④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제고 등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요구는 항시 논의되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국제문화교류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여 종국적으로는 국가문화경쟁력 저하로 귀결되어질 것이며, 이는 문화융성국가 실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입법 정책적 제언을 통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성과물을 도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우리나라 문화유산 국제문화교류사업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확보하여 우리 문화유산과 전통문화 가치의 확산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우리나라 문화유산 세계화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법제도 안착을 위한 입법 정책적 제언의 제시라고 하는 연구목적에 상응하는 연구 성과물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① 문헌·법령 조사연구, ② 비교법적 연구, ③ 입법 정책적 연구, ④ 전문가 회의 및 연구자문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특히 연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회의 및 연구자문을 심도 있게 실시하여 연구 성과물에 대한 정책 활용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제2장에서 연구대상으로서의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의 세계화 개념을 논하고 이에 근거하여 전개되고

제1장 서론

있는 문화유산 국제문화교류의 추진체계 및 주요 사업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 성과를 제시하여 보았다. 제3장에서는 문화유산의 국제문화교류 관련 국제협약 등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개관하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 문화유산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상응방안과 주요 논의 점을 소개하여 보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현행 진행되고 있는 문화유산 국제문화교류사업의 근거 법제를 소개함은 물론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안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통하여 제5장에서 논의 될 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틀을 마련하여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진행에 따른 연구 성과물은 향후 관련 입법사항에 대한 입법정책 자료로서 활용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제 2 장 문화유산 세계화를 통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 확산

제 1 절 문화유산의 세계화 개념

1. 문화재와 문화유산

(1) 문화재의 개념

문화재라는 용어는 산업혁명 이후 영국에서 천연자원의 개발이 활기를 띠게 됨에 따라 자연의 파괴와 역사적 문화유산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어난 민간의 자발적인 보호운동의 과정에서 문화적 가치를 지닌 산물이나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지칭하는 의미로 처음 사용되었다⁴⁾.

오늘날에도 문화의 개념 정립 자체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의 개념 및 법의 보호대상으로서 문화재의 범위에 대해서도 견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⁵⁾ 흔히 사용되는 문화재라는 표현은 영어의 cultural property 또는 독일어의 Kulturgut 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다⁶⁾. 또한 각 국의 문화재를 표현하는 용어 역시 아래에서와 같이 각각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4) 김창규, 문화재정책 및 법제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법과 정책연구 10권 2호, 한국법정책학회, 2010., 631면.

5) 우성기, 문화재의 지속가능한 보호를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 행정법연구 제31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1., 2면.

6) 송호영/김지현, 문화재환수관련 국내외 규범 및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970년 UNESCO협약과 1995년 UNIDROIT협약을 중심으로, 유네스코정책연구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19면.

【국가별 문화재 용어7)】

국 가	문화재를 일컫는 용어
중 국	문물 (文物)
일 본	문화재 (文化財)
타이완	문화자산 (文化資產)
북 한	문화유물 (文化遺物)
영 국	국가유산 (National Heritage)
프랑스	모뉴멍 (monument)
미 국	문화자원 (Cultural Resource)
유네스코	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

일반적으로 문화재는 역사성·예술성·학술성·경관성 등의 정신적 가치를 가진 민족단위의 공동체적 산물로 한 민족의 정체성을 표출하는 문화자산으로서 그 민족의 역사·전통·문화의 이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불가결한 유산이며, 미래 문화의 발전과 문화산업·문화관광 산업의 바탕을 이루는 문화콘텐츠이며, 이와 동시에 문화재는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류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자산으로 이해되고 있다⁸⁾.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라는 용어는 195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⁹⁾

7) 임승빈, 문화 및 문화재 행정의 개혁의 원칙과 방향, 한국행정학회(사) 하계학술대회 발제문, 한국행정학회(사), 2012., 6면.

8) 김창규, 문화재정책 및 법제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법과 정책연구 제10권(2호), 한국법정책학회, 2010., 631면.

9) 서순복/권오철, 지방자치단체 문화재행정의 진단과 및 대안 모색, 「지방정부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지방정부학회, 2008., 277면.; 이러한 문화재의 가치에 관하여서는, 김혜인, 해외박물관의 한국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한 쟁점과 활성화 방향, 예

1)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 제정 당시부터 문화재라는 개념에 대하여 그 양태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 문화재로 구분하여 온 바 있다. 그 중에서도 유형문화재는 동산문화재와 건조물 등을 포함하며, 기념물은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까지를 포섭하는 개념으로써 이해하고자 하였다.

즉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정의는 유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자연유산을 포괄하는 개념인 것이다.¹⁰⁾ 이러한 문화재에 관한 정의는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나뉘고 지정문화재는 지정주체에 따라 다시금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로 구분되어지며,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및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고, 시·도지정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지정되며, 시·도지사는 별도로 문화재 자료를 지정할 수 있다.¹¹⁾

술경영연구 제29집, 2014., 91~ 92면.- “문화재의 상징적 가치는 한 나라 문화의 물질성과 정신성을 표현하는 구체적 상징으로서, 국제문화교류에서 타 문화와 구별 및 공유될 수 있는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주고, 타 문화 구성원과의 소통의 매개체로서 역할 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육적 가치는 문화재와 관련한 다양한 전시 및 교육활동을 통해 자국민 및 타 국민에게 해당 문화에 대한 접근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당 문화를 둘러싼 이해와 상호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국제문화교류의 활동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문화재의 연구적 가치는 그것이 문화재의 필수적인 상호관련성인 원산지역 사람 및 문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 및 문화에 대한 필수적인 연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10) 김창규, 문화재보호법 총론, 동방문화사, 2011., 73면.

11) 송인범, 우리나라 문화재정책의 현황과 과제, 백제문화 제40집,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09., 60면.

【문화재보호법】 12)

제 2 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 ⑧ 생략

이와 같은 법률상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문화재의 개념과 구분은 다음과 같이 도시화되어 질 수 있는 것이며,

12)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B%AC%B8%ED%99%94%EC%9E%AC%EB%B3%B4%ED%98%B8%EB%B2%95&x=0&y=0#liBgcolor1>. 2014. 10.

【문화재의 구분¹³⁾】

지정주체 \ 유형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무형문화재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시·도지정 문화재	지방유형문화재		지방기념물			지방민속문화재	지방무형문화재
	문화재자료						

이와 같은 구분체계에 따른 현행 우리나라 문화재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지정·등록 문화재¹⁴⁾】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합계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159	3	3	1	2	0	2	11	9	11	27	6	20	49	10	0	0	313
보물	550	20	49	23	8	5	6	131	58	76	91	85	158	291	133	3	0	1,687
사적	68	4	7	18	2	1	4	64	16	18	48	34	42	97	52	6	0	481
명승	3	2	0	1	0	0	0	1	13	9	3	6	16	14	8	4	0	80
천연기념물	13	7	2	14	1	0	3	17	39	24	16	31	60	63	43	45	43	378
중요무형문화재	29	3	0	4	1	0	0	9	1	3	3	2	12	7	9	4	27	87

13) 박명수,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조해진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3. 6., 8면.
 14) 박명수,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조해진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3. 6., 109면.

제 2 장 문화유산 세계화를 통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 확산

구 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기 타	합 계
중요 민속 문화재	42	0	5	0	3	0	1	20	11	22	19	13	35	72	11	8	0	262
소 계	864	39	66	61	17	6	16	253	147	163	207	177	343	593	266	70	70	3,288
(시도지정문화재)																		
시도 유형 문화재	285	104	50	57	27	44	18	209	154	278	181	198	218	370	447	30	0	2,670
시도 무형 문화재	41	17	16	24	17	17	4	45	20	24	43	52	39	30	31	19	0	439
시도 기념물	28	48	17	60	26	41	46	186	79	119	169	109	193	145	245	67	0	1,578
시도 민속 자료	29	6	4	2	7	2	0	11	4	17	27	34	40	125	21	9	0	338
문화재 자료	50	57	43	22	27	52	19	153	125	84	320	152	232	570	525	7	0	2,438
소 계	433	232	130	165	104	156	87	604	382	522	740	545	722	1,240	1,269	132	0	7,463
지정 문화재 합 계	1,297	271	196	226	121	162	103	857	529	685	947	722	1,065	1,833	1,535	202	70	10,751
(등록 문화재)																		
등록 문화재	100	11	8	5	10	17	5	28	35	22	38	45	68	26	37	21	0	476
(문화재 총계)																		
총 계	1,397	282	204	231	131	179	108	885	564	707	985	767	1,133	1,859	1,572	223	70	11,227

2) 국제협약 상 문화재

유네스코(UNESCO)차원에서의 국제협약을 통한 문화재에 관한 개념 정의를 위한 시도는 1970년 “문화재의 불법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에서 특히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으로서의 ‘문화재(Cultural Property)’의 범주를 설정한 것으로부터 본격화 된 것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이러한 문화재의 개념은 보다 확대되어 1972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서는 기존 협약 상 문화재 범주에 더하여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과 ‘자연유산’이 포함되게 되었다. 아울러 최근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에 따라 ‘무형문화유산’도 문화재 정의에 포함되게 된 바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국제 협약 상 문화재 개념 및 보호대상으로서의 문화재 범주에 관한 주요 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1954년 Hague협약

1954년 채택된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 제1조에 따르면 문화재는 ‘모든 민족의(of every people) 문화적 유산으로서 중요성을 지니는 동산 또는 부동산 재화’로 정의되고 있다.¹⁵⁾

나. 1970년 UNESCO협약

1970년 채택된 동 협약은 제1조 문화재의 정의에 있어 문화재가 될 수 있는 11가지의 추상적인 범주를 우선적으로 열거하고 각각의 세부 범주에 해당하는 문화재에 대하여서는 협약에 참가한 각 국가의 특별 지정에 맡기는 규정내용을 취하고 있다.¹⁶⁾

15) 송호영/김지현, 문화재환수관련 국내외 규범 및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970년 UNESCO협약과 1995년 UNIDROIT협약을 중심으로, 유네스코정책연구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25면.

16) 송호영/김지현, 문화재환수관련 국내외 규범 및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UNESCO협약 제1조 : 본 협약에서 “문화재”라 함은 고고학, 선사학, 역사학, 문학, 예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함으로써 종교적 또는 세속적 근거에서 각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정된 재산으로, 다음 범주에 속하는 재산을 의미한다.

- a. 진귀한 수집품과 동물 군, 식물 군, 광물 군, 해부체의 표본 및 고생물학적으로 중요한 물체
- b. 과학, 기술 및 군사의 역사와 사회사를 포함하여 역사와 관련되고 민족적 지도자, 사상가, 과학자 및 예술가의 생애와 관련되며,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과 관련된 재산
- c. (정규적 또는 비밀리의) 고고학적 발굴 또는 고고학적 발견의 산물
- d. 해체된 예술적 또는 역사적 기념물 또는 고고학적 유적의 일부분
- e. 비문, 화폐, 판각된 인장 같은 것으로 백년이상의 골동품
- f. 인종학적으로 중요한 물건
- g. 미술적으로 중요한 재산으로 다음과 같은 것.
 - i. 어떤 보조물의 사용 또한 어떤 재료를 불문하고 전적으로 손으로 제작된 회화, 유화 및 도화(손으로 장식한 공업용 의장과 공산품은 제외)
 - ii. 재료 여하를 불문한 조상 및 조각물의 원작
 - iii. 목판화, 동판화, 석판화의 원작
 - iv. 재료 여하를 불문한 미술적인 조립품 및 몽타아지의 원작
- h. 단일 또는 집합체를 불문하고(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및 문학적 등으로) 특별히 중요한 진귀한 고판본, 필사본과 고서적, 고문서 및 고출판물
 - i. 단일 또는 집합체를 불문하고 우표, 수입인지 또는 유사 인지물
 - j. 녹음, 사진, 영화로 된 기록물을 포함한 고문서
 - k. 백년이상 된 가구와 오래된 악기¹⁷⁾

연구-1970년 UNESCO협약과 1995년 UNIDROIT협약을 중심으로, 유네스코정책연구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26면.

17) 송호영/김지현, 문화재환수관련 국내외 규범 및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아울러 동 협약 제4조에서는,

UNESCO협약 제4조 : 본 협약의 당사국은 다음 범주에 속하는 재산이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각국의 문화적 유산으로 구성됨을 인정한다.

- a. 관계국가 국민의 각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하여 창조된 문화재, 또한 관계국 영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무국적인에 의하여 그 국가의 영역 내에서 창조된 관계국에 중요한 문화재
- b. 국가 영역 내에서 발견된 문화재
- c. 출처 국 주무관청의 동의하에 고고학, 인종학 또는 자연과학 사절단에 의하여 획득된 문화재
- d. 자유로이 합의된 교환의 대상이 되어온 문화재
- e. 출처 국 주무관청 동의하에 선물로서 증여 받거나 합법적으로 구입한 문화재¹⁸⁾.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을 협약에 함께 포함하고자 하는 유네스코의 의도는 동 협약 제1조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유체 동산 중심의 문화재 개념을 보다 넓게 확대하여 각 국가의 고유한 문화유산이 가지는 가치를 포함하고 합법적 국가 간 동의를 거친 문화유산에 대하여서도 이를 세계적 인류의 유산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1972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1972년 제17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된 바 있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상 문화재의 개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문

연구-1970년 UNESCO협약과 1995년 UNIDROIT협약을 중심으로, 유네스코정책연구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122~123면.

18) 송호영/김지현, 문화재환수관련 국내의 규범 및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970년 UNESCO협약과 1995년 UNIDROIT협약을 중심으로, 유네스코정책연구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123~124면.

화재보호법 이 규정하는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가’에 해당하는 것 들을(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 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 치가 큰 것) ‘문화유산’으로, 기념물 중 ‘나’, ‘다’에 해당하는 것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동물(그 서식 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 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들을 ‘자연유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라. 1995년 UNIDROIT협약

동 협약 제1조에서는, “이 협약의 목적상 문화재는, 종교적 또는 세 속적 근거에서, 고고학적, 선사적(先史的), 역사적, 문학적, 예술적 및 과학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 협약의 부속서에 열거된 범주 중 하나에 속하는 것들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¹⁹⁾

아울러 협약의 부속서에는 이와 같은 문화재의 범주를 크게 11가지 로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 a. 진귀한 수집품과 동물군, 식물군, 광물군, 해부체의 표본 및 고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물체
- b. 과학, 기술 및 군사의 역사와 사회사를 포함하여 역사와 관련되 고 민족적 지도자, 사상가, 과학자 및 예술가의 생애와 관련되며,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과 관련된 재산
- c. (정규적 또는 비밀리의) 고고학적 발굴 또는 고고학적 발견의 산물
- d. 해체된 예술적 또는 역사적 기념물 또는 고고학적 유적의 일부분

19) 송호영/김지현, 문화재환수관련 국내외 규범 및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970년 UNESCO협약과 1995년 UNIDROIT협약을 중심으로, 유네스코정책연구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135면.

- e. 비문, 화폐, 판각된 인장 같은 것으로 백년 이상의 골동품
- f. 인종학적으로 중요한 물건
- g. 미술적으로 중요한 재산으로 다음과 같은 것.
 - (i) 어떤 보조물의 사용 또한 어떤 재료를 불문하고 전적으로 손으로 제작된 회화, 유화 및 도화(손으로 장식한 공업용 의장과 공산품은 제외)
 - (ii) 재료 여하를 불문한 조상 및 조각물의 원작
 - (iii) 목판화, 동판화, 석판화의 원작
 - (iv) 재료 여하를 불문한 미술적인 조립품 및 몽타아지의 원작
- h. 단일 또는 집합체를 불문하고(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및 문학적 등으로) 특별히 중요한 진귀한 고판본, 필사본과 고서적, 고문서 및 고출판물
- I. 단일 또는 집합체를 불문하고 우표, 수입인지 또는 유사 인지물
- j. 녹음, 사진, 영화로 된 기록물을 포함한 고문서
- k. 백년 이상 된 가구와 오래된 악기²⁰⁾

마. 2003년 무형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한 협약

2003년 채택된 동 협약의 특징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개념적 정의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 협약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공동체, 집단 및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식하는 관습, 표상, 표현, 지식, 기술 및 이와 관련된 도구, 물품, 공예품 및 문화공간을 말 한다”라고 정의하여 우리의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에서의 범주를 포함하고 있다.²¹⁾

20) 송호영/김지현, 문화재환수관련 국내의 규범 및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970년 UNESCO협약과 1995년 UNIDROIT협약을 중심으로, 유네스코정책연구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148면.

21) 송인범, 우리나라 문화재정책의 현황과 과제, 백제문화 제40집,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09., 60면.

(2) 문화유산

대외적으로는 현대인의 문화적 정체성이 형성된 근대화 과정에서 파생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증거물 등을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재인식하게 되면서 특히 서구에서는 이미 20세기의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역사적인 의미의 해석 작업이 시작되어, 산업 및 공업시설과 생산물, 모더니즘 예술, 대중문화 등 전통사회에 기반 하여 문화재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문화재로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다.²²⁾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종래의 문화재에 대한 개념과 범주는 크게 확대되어져 온 것이 대외적인 경향이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내의 문화재 정책에 있어서 문화재와 문화유산 용어의 혼란이 가중되었던 것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의 제정부터이다. 이 법에서는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뿐만 아니라 문화재를 보존·보호하기 위한 보호물 및 보호구역, 그리고 이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모두를 포함한다. 이는 문화재보호법과 국민신탁법이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에 대한 개념정의에 대한 합의 없이 새로운 정의규정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²³⁾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²⁴⁾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문화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

나. 가목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보존·보호하기 위한 보호물 및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

22) 주효진/노지영, 문화재 교류협력 기능강화와 세계유산관리 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 정부와 정책 제4권 제2호,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12., 37면.

23) 김정순,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향유를 위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32면.

24)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

다. 가목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와 나목의 규정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 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

3. ~ 5. 생략

이상에서와 같은 개념적 설정내지 범주의 구분에 있어 문화재라는 종래의 개념에 비하여 문화유산이라는 용어가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어 질 수 있다. 또한 문화유산은 단순히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것 가운데 특히 문화재보호법이 보호의 대상으로 정한 유형, 무형의 대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와 함께 그들의 비물질적인 얼과 혼이 상징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아이콘(Icon)이라고 할 수 있다.²⁵⁾ 때문에 문화재라는 제한적 개념, 즉 종래 일반적으로 인식되어져 온 바 있는 개체적·물적 가치 중심의 문화‘재(財)’(cultural property)라는 개념은 그 발상의 전환과 인식 변화가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법적 규제와 보호에 있어서 재산적 가치나 재화적 성격에 집착한 나머지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더라도 항상 이를 사유재산의 법적 범위 안에 가두어 두었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처에 이를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재화적 성격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기존의 용어와 개념은 집합적·인식론적 가치 중심의 문화‘유산(遺産)’(cultural heritage)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²⁶⁾

아울러 이러한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서의 문화유산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선행되어질 때 과거 수집-보존 중심의 원형 보존형태로서의 문화재에 대한 접근에서 탈피하여 세계화된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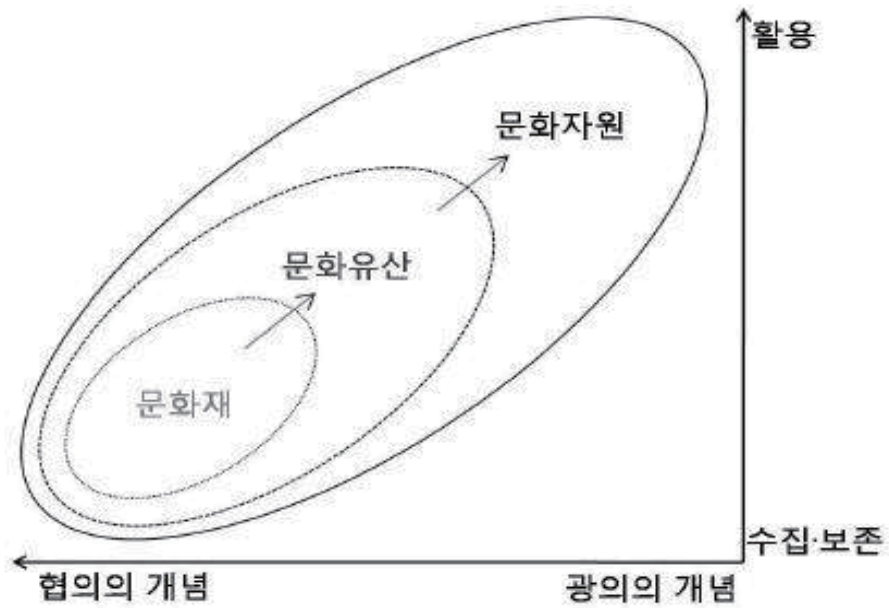
B%AC%B8%ED%99%94%EC%9E%AC%EB%B3%B4%ED%98%B8%EB%B2%95&x=0&y=0#liBgcolor0. 2014. 10

25) 이덕인, 문화유산의 불법유출 방지와 보호규범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아법학 제 54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563면.

26) 이덕인, 불법유출 문화유산에 대한 형사법적 보호, 비교형사법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1., 187면.

국 문화유산에 대한 활용과 대외적 홍보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아래의 도시화된 표 그림을 통하여 보다 용이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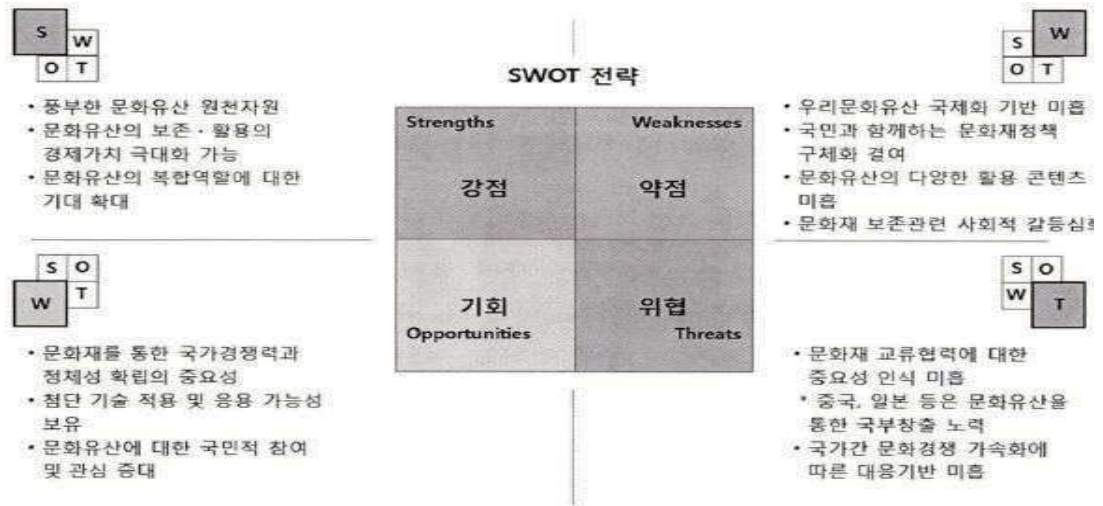
【국가유산 범위의 확대²⁷⁾】



이와 같이 세계화라는 국제적 환경에 상응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활용은 곧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국제문화교류의 중요성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선행 연구 등에서는 아래와 같이 분석되고 있다.

27) 임승빈, 문화 및 문화재 행정의 개혁의 원칙과 방향,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12., 6면.

【문화유산의 SWOT 분석²⁸⁾】



2. 문화유산의 세계화

(1) 세계화

세계화란 개념정의의 어려움은 이 용어가 오늘날 지극히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 전체와 연관된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연구자들마다 각기 다른 관점에서 수많은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²⁹⁾.

일반적으로 문화의 세계화는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문화의 보편성이란 이름으로 개별 문화를 흡수하여 초국가적인 문화를 출현시키고자하는 경향이다. 여기에서는 동질화, 획일화, 보편화가 중심에 놓이며 문화제국주의적 요소가 작동하여 약소국가들의 민족문화 정체성이 위협받고 침해받기도 한다. 또 다른 하나는 고

28) 주효진/노지영, 문화재 교류협력 기능강화와 세계유산관리 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 정부와 정책 제4권 제2호,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12., 26면.

29) 김형민, 한국문화의 세계화 전략방안, 전북대학교 국제문화교류심포지엄 자료, 전북대학교 국제문화교류연구소, 2011., 9면.

유하고 이질적인 다양한 개별 문화들을 인정하고 상호간의 차이를 존중하는 경향이다. 여기에서는 상호인정과 관용(tolerance)의 원칙에 근거하여 개별 문화들이 공시공존하거나 서로 혼용화 과정을 겪는다.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민족문화의 고유성이 세계문화의 다원성에 기여할 수 있다³⁰⁾. 이 가운데 우리 한국문화의 세계화는 후자를 지향하는 것이며, 이는 곧 문화상대주의와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³¹⁾.

(2) 국제문화교류

1) 국제문화교류 개념과 영역

각국은 문화교류와 관련한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문화교류를 대하는 각 국의 문화특성에 따른 관점의 차이일 뿐 그 요체가 되는 중심적 내용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이해된다. 각국이 사용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에 대한 용어로서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문화외교(Cultural Diplomacy), 국제문화관계 (International Cultural Relations: ICR), 국제문화정책(International Cultural Policy: ICP), 문화교류 (Cultural Exchange: CE) 등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³²⁾ 이러한 국제문화교류의 개념은,

30) 김형민, 한국문화의 세계화 전략방안, 전북대학교 국제문화교류심포지엄 자료, 전북대학교 국제문화교류연구소, 2011., 11면.

31) 김형민, 한국문화의 세계화 전략방안, 전북대학교 국제문화교류심포지엄 자료, 전북대학교 국제문화교류연구소, 2011., 13면.

32) 이종열, 문화교류의 거버넌스 접근: 한류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 17권 제4호, 서울행정학회, 2007., 125~126면.; 김혜인, 해외박물관의 한국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한 쟁점과 활성화 방향, 예술경영연구 제29집, 한국예술경영학회, 2014., 90면.- “국제문화교류란 주로 문화교류(cultural exchange), 문화이식(transculturation), 문화접변(acculturation)등의 개념들과 함께 이해되고 있다. 해당 개념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문화교류란 다른 문화, 사회, 사람들 간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예술적 표현에 대한 영감과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는 참신한 통찰력을 제공하여 편견과 증오를 예방하는 선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문화교류의 원칙은 상호주의에 근거하고 있으며, 문화교류활동을 통해 상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갈등의 해소 및 호감의 증진을 가져오고 문화적으로는 상호간의 문화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문화영역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추구하고 이로써 자국의 문화를 풍부하게 하기 위한 국가 간 교류활동을 국제문화교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화교류란 국가 간 문화예술 교류를 통하여 상호 이해 및 우호, 가치관 공유를 넓혀 인류복지와 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는 일체의 활동”³³⁾

“국제문화교류란, …… , 문화교류를 문화 주체성이 상이한 외국문화와의 유·무형의 접촉과 그 상관관계를 함께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문화외교와의 개념 차이를 설명하면서 개별자로서의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이 관계되면서 상호 문화적 감수성을 자극하고 문화 부문의 창의성을 풍부하게 하는 행위이고, 여기에서의 문화는 외교적 수단이 아닌 네트워크와 의사소통의 한 가지 방법”³⁴⁾

등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특히 그 교류활동자체에 비중을 두어 “모든 주체들이 문화 콘텐츠를 통해 타 국민과 상호교류를 하는 활동”으로 광의적으로 규정하기도 하며 이와는 달리 협의적으로 “국제문화교류란 ‘문화부문의 모든 주체들이 문화콘텐츠를 통해 타 국민과 상호관계를 맺고, 개인차원에서는 타 문화이해와 창조적 자극을 얻고, 국가차원에서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등의 발신과 수용으로 문화적 발전을 성취하며, 전 지구적 차원에서는 문화다양성의 지속과 확산에

33) 주효진/노지영, 문화재 교류협력 기능강화와 세계유산관리 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 정부와 정책 제4권 제2호,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12., 25면.

34) 신두섭, 한류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류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경제연구 제15권 2호, 한국문화경제학회, 2012., 105면.

기여하는 활동'으로 이해하고, 이는 국제문화교류 활동의 내포와 외연적 요소들을 고려하고, 국제문화교류에 공공부문이 비용지원을 해서 성취할 것으로 기대하는 기능적 성과를 종합한 것”³⁵⁾ 이라 하여 교류의 목적·성과에 초점을 두어 정의를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개념적 요소 등을 내포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의 주요 영역을 살펴보면 크게 순수 문화예술교류 행사, 문화유산 교류(문화재, 전통문화, 음식문화 등), 문화산업분야 진출을 위한 교류, 인사업교류로 나누어볼 수 있다.³⁶⁾

특히 문화유산 교류의 경우 다른 문화적 요소에 대한 국가 간 교류에 비하여 자국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여타 다른 문화교류 영역에 비하여 교류국가간의 상호적 이해를 도와 상호간의 문화적 역량을 제고하고, 순수문화예술교류의 차원으로서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³⁷⁾ 때문에 문화유산의 세계화 과정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국제문화교류와 문화외교 등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교류를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특히 국제문화교류와 문화외교의 개념적 구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제문화교류는 ‘국가를 홍보하고 자국문화를 이해시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고, 문화외교는 ‘특정국가의 정부기구 또는 그 정부기구의 지원을 받는 특정단체가 자국의 문화적 국가이익을 대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벌이는 일련의 활동’이라 하여 크게 구분하고자 하고 있다.³⁸⁾

35) 정정숙, 국제문화교류 진흥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13~14면.

36) 김혜인, 해외박물관의 한국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한 쟁점과 활성화 방향, 예술경영연구 제29집, 한국예술경영학회, 2014., 91면.

37) 김혜인, 해외박물관의 한국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한 쟁점과 활성화 방향, 예술경영연구 제29집, 한국예술경영학회, 2014., 91면.

38) 고정민, 국제간 경제협력·통합에서 문화의 역할, 인문콘텐츠 제28호, 인문콘텐츠

특히 문화외교와 관련 하여 선행연구 등에서는,

“국가의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을 위한 ‘문화’의 ‘차용’은 국익이나 국가 이미지를 고려하지 않은 순수한 문화교류 활동과는 그 목적이나 방법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문화홍보’와 ‘문화외교’는 국가 이미지 제고와 이를 통하여 모종의 국익 획득을 목적으로 대외적 차원에서의 ‘문화’를 ‘차용’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홍보’는 용어가 내용을 반영하듯이 ‘문화’를 ‘차용’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홍보’는 용어가 내용을 반영하듯이 ‘문화’ 그 자체의 홍보이거나 ‘문화’를 차용한 국가의 홍보로 ‘문화선전(propaganda)’을 순화시킨 개념이다. ‘문화외교’는 여러 방법의 의미해석이 존재하는데, ‘문화’를 외교의 도구로써 이용하는 경우(문화의 ‘차용’)가 있고 공식적 차원에서의 국가 간 문화교류로 보는 경우도 있다. 문화홍보와 문화외교 어느 경우이든 간에 문화는 그 내재적 동인과 원리에 따라 자발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과 전략에 의거하여 ‘교류되는’ 것이다.”³⁹⁾

라고 하여 문화교류와의 구분을 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도 도시화하여 본다면 아래와 같다.

학회, 2013., 76면.

- 39) 홍기원,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문화외교의 논쟁적 요소들에 대한 고찰, 예술경영연구 제18집, 한국예술경영학회, 2011., 68면. ; 홍기원,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문화외교의 논쟁적 요소들에 대한 고찰, 예술경영연구 제18집, 한국예술경영학회, 2011., 83면.- 동저자는 또한 문화외교의 현대적 특성에 관하여, “현대 문화외교는 일방적인 외교전이 아닌 문화교류의 속성으로서의 ‘쌍방향성’, ‘소통적’ 성격을 가미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문화예술에서의 쌍방향적 소통은 과정적 요소가 중요한 활동으로서, 서로 다른 문화적 토양에서 발견되는 행위들이 상이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탐색하고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행위이다. 교류 및 소통의 과정에서 창조적 자극이 발생하거나 협력적 창조활동이 생성되는 긍정적인 면도 기대할 수 있지만 상호작용의 결과 반드시 상호간의 이해와 설득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확신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교류는 그 목표가 특정화되고 구체화되기 어려운 열린 활동으로서의 속성을 갖는다.”라고 하고 있다.

【국제문화교류의 유사 개념들 간 공통점과 차이점⁴⁰⁾】

용어 구분	내 용	
	공통점	차이점
문화 교류	국제적 활동 문화콘텐츠 창조·활용 국가의 직·간접지원 가능	문화계 전문기획, 쌍방 예술가와 시민 주체, 쌍방향적 소통
문화 홍보		문화계 전문기획, 문화홍보전문가 주체, 일반적 제공이나, 추후 쌍방향 교류 기반
문화 외교		외교전문가 기획, 문화계가 협조, 일방적 제공
문화 협력		개발협력 전문가와 문화계의 기획, 단기적으로는 일방적 제공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쌍방향 교류 기반

2) 세계화와 국제문화교류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 ‘문화유산의 세계화’라는 개념의 논의와 관련 국가정책의 실행은 과거 노태우 정부시절부터 본격화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의 문화유산의 세계화 사업은 주로 번역 사업과 한국문화 소개 책자 발간 및 배포, 해외유수 박물관에 한국관 설치 및 우리 문화재 전시, 그리고 한국문화 바로잡기 운동 같은 것들이 시행된 바 있으며, 이러한 우리 문화의 세계화와 같은 주제 외에도 국제문화외교의 강화, 한국문화권 확산, 해외활동 교포예술가 지

40) 정정숙, 국제문화교류 진흥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14면.

원과 같은 사업을 통해 해외 문화 활동에 대한 문화정책을 강화한 바 있다.⁴¹⁾

현대에 있어 문화재 정책은 종래 물질적·동산중심 문화재 개념에서 탈피하여 비물질적·가치 중심적 문화재에로까지 그 개념 및 보호 범주를 확대한 문화유산으로의 이해와 재인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은 이미 위에서 살펴본 바 있다. 이때 각 국은 특히 급속히 발달되어가고 있는 기술문명 등의 환경변화와 다양한 문화향유에 대한 자국민의 욕구에 상응하는 문화정책을 실현해나가야 하는 책무를 가지는 것이다. 때문에 자국의 전통적인 문화유산을 보다 널리 보급 함은 물론 자국의 문화적 역량을 대외로 확대하는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국제문화교류) 궁극적으로 자국문화유산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세계화).

제 2 절 문화유산 세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전개와 운영현황

1. 추진 및 지원체계

현재 정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에서 문화유산의 국제문화교류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정부차원의 지원업무를 주된 추진주체 및 주요업무에 관하여 개관하고자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관 문화정책국에서 해외문화교류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국내에는 소속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을 두어 해외 문화홍보

41) 정갑영, 세계화의 의미와 문화정책의 기본방향, 문화정책논총 제6집, 한국관광문화연구원, 1994., 11면.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20개국 24개 지역에 해외문화원을 설치하여 문화교류, 언어교육, 홍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⁴²⁾ 특히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은 해외 조직을 두어 한국관광 활성화와 콘텐츠 수출입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립국어원은 36개국에 개설된 77개소의 세종학당을 통해 해외 한국어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⁴³⁾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단체 및 유관기관 중 국제문화교류사업(국제체육교류 사업을 제외)을 사업 목적 중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기관은 대략 23개 기관과 단체가 있다.⁴⁴⁾

(2) 문화재청⁴⁵⁾

본 연구의 주된 대상으로써의 문화유산의 세계화와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문화재청이라 하겠으며, 조직의 체계와 소요 예산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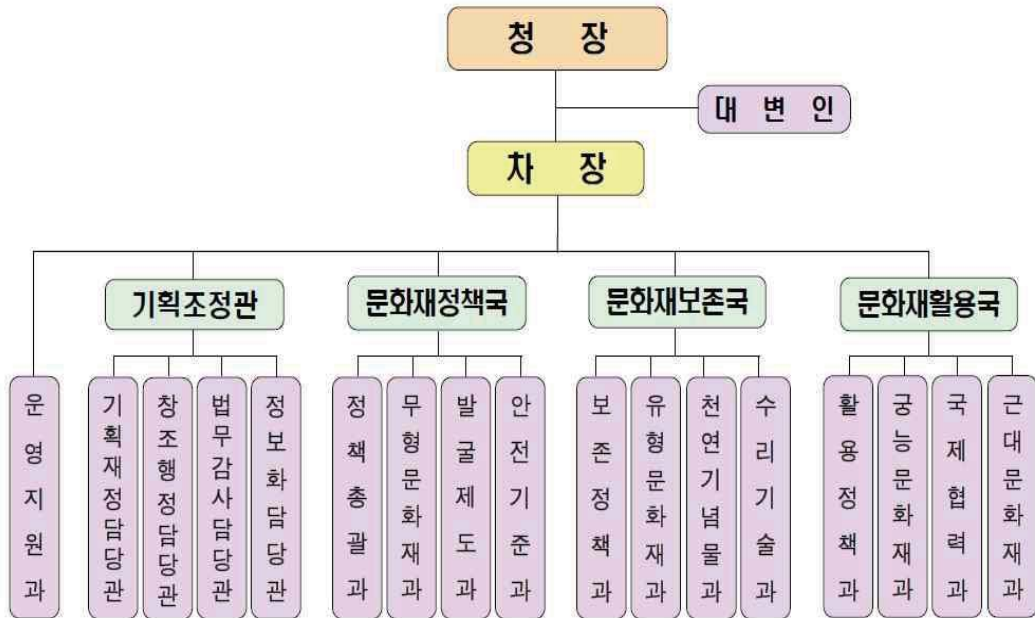
42) 신두섭, 한류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류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경제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문화경제학회, 2012., 113면.

43) 신두섭, 한류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류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경제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문화경제학회, 2012., 113면.

44) 신두섭, 한류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류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경제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문화경제학회, 2012., 109면.

45) 송인범, 우리나라 문화재정책의 현황과 과제, 백제문화 제40집,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09., 62면..-“문화재행정은 1945년 구 황실 사무청이 발족하면서 시작되었다. 1961년 문교부의 외국으로 문화재관리국이 설치된 이래 문화재정책은 문교부, 문화공보부, 문화부,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의 외국(外局)인 문화재관리국에서 담당해 왔다. 문화재행정의 수요가 증가되고 중요성이 재평가됨에 따라 1999년 5월 정부조직 개편 시 외청(外廳)인 문화재청(1급 기관)으로 된 후 2004년 5월에는 차관청으로 승격되었다.”

【문화재청 기구46】



【문화재청 예산현황47】

(단위: 억원)

구 분	'11년예산	'12년예산	'13년예산	'14년예산	비 고
계	5,228	5,557	6,148	6,199	
일반회계	4,088	4,329	4,921	5,072	
광특회계	210	148	162	98	
문화재 보호기금	930	1,100	1,065	1,029	'90년 도입

46) 문화재청, 2014년도 주요업무 현황, 2014. 2., 1면.

47) 문화재청, 2014년도 주요업무 현황, 2014. 2., 2면.

특히 국제협력과에서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세계문화유산, 남북교류 세계유산, 문화유산 ODA, 국외소재 문화재재단 및 환수 업무 등이다. 2014년 예산운용계획에서 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 및 국외 문화재 환수 등 국제협력 강화를 중점 편성방향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아태지역 문화유산 보존 및 세계유산 등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외 문화재 조사연구·환수·활용 등 국가 간 지속적인 문화재협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해외문화재 환수, 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재 국제 업무의 증가에 따라 정책적 수요를 뒷받침하는 담당조직 및 인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어 진 바 있으며,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반환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적 역할이 요구 시 되면서 이를 주관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추진 주체로서의 문화재청에 대한 요구와 인식이 증대하고 있다.⁴⁸⁾

1)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은 산하에 한국문화재재단을 설립한바 있다.(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2014년 8월 29일,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명칭변경). 주된 업무로는 문화재보호법 제9조제3항 관련, “1. 공연·전시 등 무형문화재 활동 지원 및 진흥, 2. 문화재 관련 교육, 출판, 학술조사·연구 및 콘텐츠 개발·활용,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 4. 전통 문화상품·음식·혼례 등의 개발·보급 및 편의시설 등의 운영, 5. 문화재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교류, 6. 문화재 보호운동의 지원, 7. 전통문화행사의 복원 및 재현, 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등을 법정화하고 있다.

48) 주효진/노지영, 문화재 교류협력 기능강화와 세계유산관리 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 정부와 정책 제4권 제2호,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12., 3면.

가. 국제 NGO 활동⁴⁹⁾

“한국문화재단은 2010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무형유산 분야 국제 비정부기구(NGO) 자격을 획득하였다. 이에 따라 재단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예정종목의 국·영문책을 발간하고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무형유산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나. 국제협력사업(문화동반자사업)⁵⁰⁾

“한국문화재단은 지난 2008년부터 문화동반자 사업(CPI: Cultural Partnership Initiative)에 참여하고 있다. 문화동반자 사업은 각 나라에서 선발된 문화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6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자신의 전문분야를 연구하고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2010년 유네스코 무형유산 자문기구(NGO)로 인가받은 이후 ‘무형유산 기획전문가 초청연수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재단의 문화동반자 사업에는 몽골, 베트남, 불가리아, 케냐, 콜롬비아 등 11개국에서 총 21명의 문화 전문가가 초청되었다.”

다. 문화유산 연구사업(저개발국 세계유산 보존관리지원 사업)⁵¹⁾

“저개발국 세계유산 보존관리지원 사업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문화유산 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이다. 문화유산 보존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문화유산 보존관리지원 분야에서 한국의 인지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함에 목적이 있으며, 라오스 홍낭시다 유적, 캄보디아 프레아 피투 유적, 미얀마 바간 유적을 대상으로 보존·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49) <http://www.chf.or.kr/c3/sub2.jsp>

50) http://www.chf.or.kr/c3/sub2_2.jsp

51) http://www.chf.or.kr/c3/sub2_2.jsp

2) 국외소재문화재재단⁵²⁾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과 관련한 각종 전략·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문화재와 관련한 제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12년 7월에 문화재청 산하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설립되었다. 본 재단은 문화재보호법 제69조의3제6항과 관련, “ 1.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 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보호·활용에 관한 연구, 3. 국외소재문화재의 취득 및 보전·관리, 4.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교류 및 국제연대 강화, 5.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관련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6. 외국박물관 한국실 운영 지원, 7. 한국담당 학예사의 파견 및 교육 훈련, 8. 국외소재문화재의 보존처리 및 홍보 지원, 9. 국외문화재재단의 설립목적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 이 경우 수익사업은 문화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그 밖에 국외문화재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등을 업무로 하고 있다.”

(3) 외교부

국가 간 대외관계의 담당부서인 외교부는 본부에 문화외교국을 두고 있으며,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통해 해외 문화예술교류협력, 인적교류, 한국학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각국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에서는 문화관련 외교업무를 지원하고 있다.⁵³⁾ 외교부의 문화외교 사업의 주된 방향성은, 문화협정 및 문화교류 계획서 체결을 통한 문화외교 강화를 도모함에 있으며, 특히 산하 한국국제교

52) <http://www.overseaschf.or.kr/site/main/index001> 이하 참조.

53) 신두섭, 한류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류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경제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문화경제학회, 2013., 113면.

류재단은 국가의 문화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일련의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외교부의 문화외교 사업은 문화외교국의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사업’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문화예술교류 협력사업’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⁵⁴⁾

(4) 한국문화원

한국문화원은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한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대외문화홍보를 보다 조직적, 체계적으로 전개할 수 있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 이미지 개선 및 대외문화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1979년에 최초로 설립되었다.⁵⁵⁾ 이후 2013년 6월 기준 20개국 24개소의 문화원이 개원된 바 있다.⁵⁶⁾ 한국문화원은 국제문화교류의 증진과 우리문화의 홍보를 위한 제반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5) 코리아센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 소개, 한국어 보급, 한국문화상품 수출, 관광 홍보 등 한국문화에 대한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재외 문화원을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사무소를 집적시키는 코리아센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확대할 계

54) 신두섭, 한류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류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경제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문화경제학회, 2012., 111~112면.

55) 고정민,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한국문화원 법적 위상 재정립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9면.

56) 박명수,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법률안(길정우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3.12., 16면.; 아울러 본 보고서에서는(16면~17면) 문화원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문화원 설치에 관한 법률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다만, 한국문화원은 현재 재외공관의 부속기관으로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55조에 그 설치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에 따라 문화원 설치와 문화원장의 임명은 외교부장관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에 한국문화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획이다. 2006년부터 추진되어 LA(2006.9.), 상해(2007.7.), 동경(2009.6.)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뉴욕 코리아센터는 2012년 현재 설계 중으로 2014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⁵⁷⁾

【코리아센터 운영 현황⁵⁸⁾】

구 분	LA	북 경	상 해	동 경
설립일	2006. 9. 30.	2007. 3. 22.	2007. 7. 12.	2009. 6. 18.
규 모	지상3층	지하3층, 지상4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8층
연면적	2,540m ²	6,302m ²	2,632m ²	8,349m ²
주요 시설	전시장, 공연장, 강의실, 문화콘텐츠· 관광체험관, 도서실, 사무실	전시실, 공연장, 도서실, 디지털에듀체 험실, 강의실, 사무실	도서실, 전시장, 강당, 강의실, 사무실 등	공연장, 전시장, 도서실, 강의실, 사무실 등
개설 사업비	60억원	213억원	105억원	906억원
사업 기간	2005. ~ 2006.	2005. ~ 2007.	2006. ~ 2007.	2002. ~ 2009.
추진 형태	건물매입+ 리모델링	건물매입+ 리모델링	건물매입+ 리모델링	부지매입+ 신축
입주 기관	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저작권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관광공사	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등

57) 문화체육관광부,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 정책자료집 2 문화예술, 2013, 130면.

58) 박명수,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법률안(길정우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3.12., 19면.

2. 추진현황 및 성과

앞에서 개관한 바와 같은 문화유산 세계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추진 체계에 따라 그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낳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문화유산의 세계화 과정을 ①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② 국외소재 한국 문화재 환수-활용, ③ 문화유산 ODA사업, ④ 남북한 문화교류사업 등 4개 주요 범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추진현황과 주요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 자긍심 고취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해당 국가의 문화적 자부심이며 문화관광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국가의 문화적 위상을 측정하는 지표가 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등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⁵⁹⁾ 이러한 노력에 따라 2012년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유산 10건, 기록유산 9건, 무형유산 15건 총34건의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등재현황⁶⁰⁾】

구 분	세계 유산	기록 유산	무형 유산
연 혁	○ 1972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보호에 관한 협약 채택 ○ 1968년 우리나라 가입	○ 1992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사업 창설 ○ 1997년 세계기록유산 목록 화 사업 시작	○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채택 ○ 2005년 우리나라 가입 ○ 2008년 ‘무형유산 대표목록

59) 송인범, 우리나라 문화재정책의 현황과 과제, 백제문화 제40집, 공주대학교 백제 문화연구소, 2009., 80~81면.

60)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주요업무 통계자료집, 문화재청, 2012. 12. 31., 60면.

제 2 장 문화유산 세계화를 통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 확산

구 분		세계 유산	기록 유산	무형 유산
				및 긴급보호 목록 제도' 시작
신청주기 및 신청마감		○ 신청주기: 매년 ○ 신청서류제출: 매년 2.1까지	○ 신청주기: 매 2년마다 ○ 신청서류 제출: 격년 3.31까지	○ 신청주기: 매년 ○ 신청서류 제출: 매년 3.31까지
절 차		<국 내> ○ 신청대상 선정 - 세계유산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국 제> ○ 자문기구평가: 유네스코 비정부기구인 ICOMOS, IUCN에서 평가 (제출 익년 4월 까지) ○ 최종심의·결정: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 (매년 6-7월 중)	<국 내> ○ 신청 대상 공모 실시 ○ 신청 대상 선정 - 동산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 세계유산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국 제> ○ 평가 및 최종 심의·결정 - 유네스코 등재심사 소위 1차평가 (12월-익년 2월) -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IAC) 심의 (제출 익년 4월 -5월) - 유네스코 사무총장 최종 발표	<국 내> ○ 신청대상 선정 - 무형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 세계유산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국 제> ○ 검토 및 평가: 정부간위원회 등재심사소위원회 (제출익년 1월 -5월) ○ 최종심의·결정: 무형문화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결정 (제출익년 9월 -11월)
등재현황	한 국	10건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1995.12.9.), 창덕궁, 화성 (1997.12.6.) 경주역사유적지구,	9건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1997.10.1.) 직지심체요절, 승정원 일기(2004.09.24)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조선왕조의례	15건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5.18.) 판소리(2003.11.7.) 강릉단오제 (2005.11.25.)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제 2 절 문화유산 세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전개와 운영현황

구 분		세계 유산	기록 유산	무형 유산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 (2000.12.2.)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2007.7.2.) 조선왕릉 (2009.6.30.) 한국의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2010.7.31.)	(2007.6.14.) 동의보감(2009.7.31.) 일성록, 5.18관련기록물 (2011.5.25.)	영산재,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처용무 (2009.9.30.) 가곡, 대목장, 매사냥 (2010.11.16.) 택견, 줄타기, 한산모 시짜기 (2011.11.29.) 아리랑(2012.12.5.)
	잠정 목록 (15건)	15건 강진 도요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남해안일대 공룡화석지, 염전, 서남해안 갯벌, 대곡천암각화군, 남한 산성, 중부내륙산성군, 공주부여역사유적지구, 익산역사유적지구, 우포늪 외암마을, 낙안읍성, 한 국의 서원, 한양도성	잠정목록 제도 없음	잠정목록 제도 없음
	세 계	962건(157개국) (문화745, 자연188, 복합29) -이탈리아 47건, 중국 43건, 일본 16건 ※ 위험에 처한 유산 : 38건(30개국) ※ 공동등재 27건	238건(96개국) 독일 12건, 오스트리아 12건, 러시아 11건, 폴 란드 10건, 멕시코 9건, 중국 7건, 일본 1건 등 ※ 공동등재 17건	257건(88개국) 중국 29건, 일본 21건, 크로아티아 12건, 스페 인 11건, 터키 10건, 프 랑스 10건, 인도 12건 등 ※ 공동등재 15건

제 2 장 문화유산 세계화를 통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 확산

이러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에 대한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총 821억 1,400만원의 재정적 투입을 하고 있다.⁶¹⁾

【세계유산 등재 문화재 보존관리 예산 현황: 2014년⁶²⁾】

(단위: 백만원)

	등재일	예산액		
		국 비	지방비	계
수원화성	1997.12. 4	8,432	3,614	12,046
고인돌 유적(고창·화순·강화)	2000.12. 2	4,080	1,749	5,829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양동)	2010. 8. 1	3,284	1,407	4,691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2007. 6.27	8,390	3,596	11,986
해인사 장경판전	1995.12. 9	385	165	550
석굴암·불국사	1995.12. 9	1,988	852	2,840
종묘	1995.12. 9	260	-	260
창덕궁	1997.12. 4	1,540	-	1,540
경주역사유적지구	2000.12. 2	19,756	8,466	28,222
조선왕릉	2009. 6.30	14,150	-	14,150
계		62,265	19,849	82,114

6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9379, 2014., 8면.

6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9379, 2014., 8면.

특히 유네스코가 1992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사업’은 ‘세계기록유산 목록’, 즉 세계적인 중요성을 지닌 기록물을 목록화하는 사업으로,⁶³⁾ 2014년 2월 현재 전 세계 102개국 5개 기구의 기록유산 301건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록사업에 있어 한국은 세계기록유산을 11건이나 등재시켜 이 분야에서 선도국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기록유산 강국으로서 그간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다른 국가에 전수해주고자 2009년부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훈련 워크숍을 개최해오고 있다.⁶⁴⁾

(2) 국외소재 한국 문화재 환수-활용의 제고

현행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제8항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재란, “---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우리 영토 밖에 존재하는 문화재에 대한 접근 방법은 크게 불법적으로 유출된 문화재의 환수와 적법하게 반출된 해외 문화재의 문화교류차원에서의 정당한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고려 관점에 따라 국외소재 한국문화재에 대한 환수와 활용에 대한 정부차원의 전략적 노력과 그에 상응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63) 이영진, 세계기록유산의 등록과 보존을 위한 법적 문제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18권(1호), 충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1., 15면 .- “UNESCO는 1992년에 세계기록유산사업을 시작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이는 1995년의 UNESCO총회에서 채택된 ‘기록유산보호일반지침’에 따라 수행되고 있다. 동 지침은 UNESCO와 도서관 및 기록문서에 관해 세계의 대표적인 비정부간 전문기구인 두 기관 즉 도서관협회국제연맹(IFLA)과 국제기록물협의회(ICA)와의 오랜 기간 협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IFLA가 UNESCO로부터 국제자문위원회(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의 인준을 받아 확정된 동 일반지침은 세계의 기록유산 사업에 관한 기술적, 법적, 재정적 기본구조 및 그 운영체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64) 박하영,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훈련 워크숍,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ODA의 방향과 전략, 42면.

1) 국외소재 문화재의 환수

유출 문화재의 반환은 문화유산의 교류가 가지는 궁극적 의미와 아울러 현재 각 개별국가는 물론 나아가 인류 공통의 주요 관심사라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역사적으로 임진왜란, 병인양요,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며 수많은 문화재가 일본을 비롯한 외국으로 반출되어 이를 환수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⁶⁵⁾

2013년 4월 현재 아래의 표와 같은 국가 등에 문화재가 산재하여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해외 소재 한국문화재 현황⁶⁶⁾】

(단위 : 점 / 2013년 4월 기준)

소장국	소장처	수 량
일 본	동경국립박물관 등	66,824
미 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등	42,325
독 일	켈른동아시아박물관 등	10,727
중 국	북경고궁박물관 등	8,278
영 국	영국박물관 등	7,954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동양박물관 등	4,067
프랑스	국립기메박물관 등	2,896
대 만	국립궁궐박물관 등	2,881

65) 손경한, 문화재환수협약의 개요와 한국의 대응방안, 국제사법연구 제15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09., 201면.

66) 김혜인, 해외박물관의 한국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한 쟁점과 활성화 방향, 예술경영연구 제29집, 한국예술경영학회, 2014., 94면.

제 2 절 문화유산 세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전개와 운영현황

소장국	소장처	수 량
캐나다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등	2,192
오스트리아	비엔나민속박물관 등	1,511
덴마크	국립박물관	1,278
카자흐스탄	국립도서관	1,024
헝가리	헤렌쯔호프동양미술박물관	341
바티칸	민족학박물관	298
스위스	민족박물관 등	119
벨기에	왕립예술역사박물관	56
스웨덴	동아시아박물관 등	51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41
네덜란드	리이덴국립민속박물관 등	35
이탈리아	국립동양도자박물관	17

이와 같은 국외소재 문화재의 환수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국제 규범적으로는 1983년에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방지수단에 관한 1970년 문화재불법거래금지협약에 가입하였고 1995년 문화재환수협약에의 가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⁶⁷⁾. 또한 해외 각 국 정부부처는 물론 해외의 문화재 재단 등과의 협력을 통한 관련 협업 등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근거, 아래의 표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은 성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67) 손경한, 문화재환수협약의 개요와 한국의 대응방안, 국제사법연구 제15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09, 201면.

제 2 장 문화유산 세계화를 통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 확산

【국외문화재 환수현황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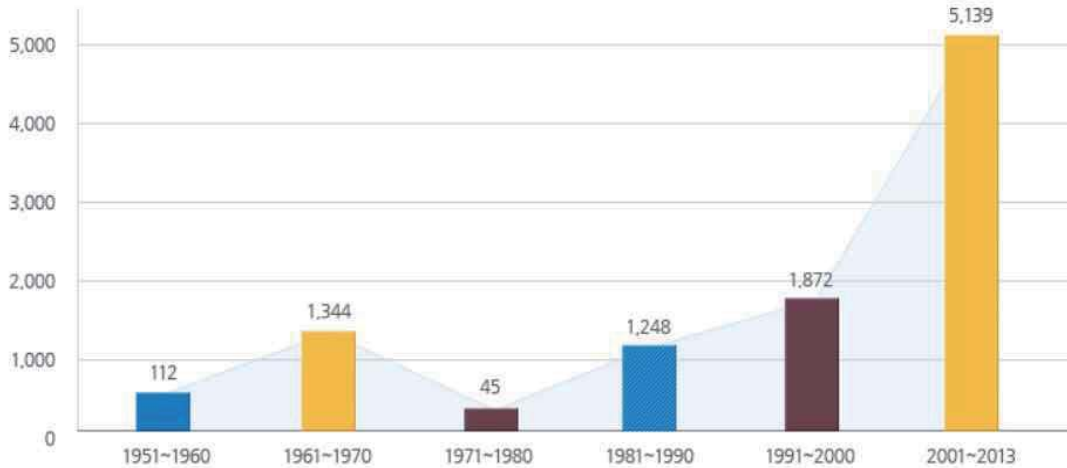
(단위 : 점)

대상국	수 량	정 부				민 간			
		계	협 상	구 입	기 증	계	협 상	구 입	기 증
일 본	6,316	5,831	2,933	9	2,889	485		242	243
미 국	1,298	1,138	2	149	987	160		1	159
스페인	892	892			892				
독 일	678	657			657	21	21		
프랑스	300	300	297		3				
뉴질랜드	186	186		184	2				
이탈리아	59	59		59					
캐나다	20	20			20				
호주	1	1			1				
노르웨이	1	1			1				
합계	9,751	9,085	3,232	401	5,452	666	21	243	402

* 소장 기관의 자료부족으로 인해 실제 수량에 차이가 날 수 있음

68)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주요업무 통계자료집, 문화재청, 2012. 12. 31., 61면.

【시대별 문화재 반환 현황⁶⁹⁾】



2) 국외소재 문화재의 활용

국외소재 한국문화재의 환수와 별개로 해외에 소장된 한국문화재의 활용을 강화하여 넓은 의미에서 문화재를 통한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활동 전략의 모색이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⁷⁰⁾ 이를 위하여 국내법적으로는 다양한 개별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 국내·외에서 점진적으로 국외문화재를 매개로 한 문화교류의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확장되면서 2011년 문화재청 내 문화재활용국(국외문화재팀)이 신설되었고, 이후 국외문화재에 대한 현지 조사와 활용 전담 기구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설립되면서 관련 사업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⁷¹⁾

69) 국외소재 문화재재단 홈페이지-

<http://www.overseaschf.or.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1002002>

7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소장기관 거점지정 및 육성방안 연구, 문화재청, 2012., 3면.

7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소장기관 거점지정 및 육성방안 연구, 문화재청, 2012., 20면.

【주요 기관별 지원목적 및 기본 지원내용⁷²⁾】

기 관	지원목적	기본 지원내용
한국국제 교류재단	-한국유물 전시 가능 한 항구적 공간 마련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도모	-한국실 설치 및 개·보수 재정지원 -전시지원 (상설전시 관련, 특별기획전시 재정지원) -인력지원(해외박물관 큐레이터 워크숍, 글로벌 뮤지엄 인턴십, 한국실 담당 큐레이터 파견 관련) -일반기부사업 및 지정기부사업을 통한 재정지원(민간기업 및 단체의 해외박물 관 후원 창구역할)
국립중앙 박물관	-대외 한국문화 관심도 증가 -국가 이미지 제고 -해외 박물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한국실 설치 및 개·보수 재정지원 -전시지원(상설전시/특별전시 관련 유물 대여 및 전시기획 등) -인력지원(한국실 담당 큐레이터 파견) -자료지원(한국유물 관련 발간물 재정 지원, 전시 및 교육자료 지원) -자문지원(한국실 설치 및 개·보수, 한 국유물 및 전시관련 등)
국립민속 박물관	-우리민족 분포지역 대상 한국문화 홍보 -해외박물관과의 네트 워크 형성	-한국실 설치 및 개·보수 재정지원 -전시지원(상설전시용 민족자료 등) -자료지원(한국 유물관련 교육자료 지원) -자문지원(한국실 설치 및 상설전시 등)
문화재청	-국외소재 문화재 활용 기본계획 수립 -문화재 관련 다자간 환수 협력·연대(네 트워크 구축)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보호 및 관리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정책 총괄

72) 김혜인, 해외박물관의 한국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한 쟁점과 활성화 방향, 예술 경영연구 제29집, 한국예술경영학회, 2014., 95~96면.

제 2 절 문화유산 세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전개와 운영현황

기 관	지원목적	기본 지원내용
국립문화재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요 문화재에 대한 학술조사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보존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실태조사 및 연구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보존 처리 지원사업
국외소재 문화재 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외 한국문화재 조사·연구 -전문가그룹 네트워킹 -국외소재 문화재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조사사업 -국외소재 문화재 관련 연구진흥사업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보존처리 지원 -국외소재 문화재 관련 출판 및 교육 사업
해외문화홍보원/해외문화원/코리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문화 홍보 -국제문화교류확대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재국 박물관의 요구를 파악하여 국내 한국실 관련 지원기관과의 매개체로서 역할 함
민간기업 및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문화마케팅 -기업의 사회적 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실 설치 및 개·보수 재정지원 -유물구입비 지원 -기획전시 지원 -기술지원(오디오가이드북, 대형 정보표시 모니터 설치 등)

(3) 문화유산 ODA사업을⁷³⁾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 선도국 위상 강화

문화유산분야 ODA는 문화유산이라는 각 국의 문화정체성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문화 관련 분야 여타 다른 영역들과 성격이 구분된다. 대표적인 문화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영역에는 언어와 스포츠, 예술 등이 있다. 이와는 달리 문화 유산분야의 공적개발원조는 수원국의 전통과 문화적 감성에 기반을 둔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상호 간의 감성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행위의 원조형태가 가능하다.⁷⁴⁾ 또한 문화유산에 대한 복원과 지속적인 유지관리는 경제적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국가적 자긍심을 높이는 사회적 효과를 동반하기 때문에 승수효과가 매우 높으며, 유형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복원 및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외부 노출효과가 뛰어나 공여자 가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⁷⁵⁾

73) KOICA 국제개발협력용어집 (<http://www.koica.go.kr/>) -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의 개념은, “개도국의 경제발전이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원조국이 자체의 재정자금을 사용하여 공여하는 순수한 원조를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정의하는 ODA의 요건으로는 첫째,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 또는 그 실시기관에 의해 개도국 및 다자간 기구에 대해 공여되어야 하며 둘째,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고 셋째, 공여조건이 완화된 원조, 즉 증여율(Grant Element)이 25% 이상인 양허성 조건의 자금이어야 한다. ODA는 원조의 공여국과 수원국간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양자간 협력과 국제기구에 대한 출자나 분담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다자간 협력으로 구분되며, 양자간 협력은 상환의무 여부에 따라 무상협력과 유상협력으로 구분된다. 또 무상협력은 무상원조(자본협력)와 기술협력으로 구분된다. DAC회원국은 1999년도 기준, 평균GNP의 0.24%인 총 564억 달러의 ODA를 공여하였으나, 유엔은 일정 기간까지 ODA/GNP 비율을 0.7%로 늘리기로 결의한 바 있다.”

74) 정하영, 문화유산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개발도상국 세계유산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유산분야 ODA 사업 정향을 중심으로, 문화재관리학 통권 제11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14., 147면.

75) 광재성, 유네스코 ‘문화와 발전’ 담론과 문화유산 ODA의 중요성,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ODA의 방향과 전략(유네스코 문화유산 개도국 협력 전략세미나 자료), 문화재청-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 62면.

우리나라는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수원국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보존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⁷⁶⁾ 특히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05년부터 주관하는 ‘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국제협력(Asia Cooperation Program on Conservation Science, 이하 ACPCS)’ 사업의 경우 우리나라가 주체가 되어 아시아권 문화유산 보존 분야의 발전과 역할을 주도함으로써 인하여 국가 위상 강화는 물론 아시아권에서의 선도적 위치 점유와 향후 한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네트워크 구축도 꾀하고 있다. 본 사업은 초청연수와 현지기술교육으로 구성되는데, 2012년까지 초청연수만 실시하다가 2013년부터 대상 국가를 방문하여 현지에서 보존기술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수행하였다.⁷⁷⁾

(4) 남북 문화교류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민족통일 기반 마련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협력 사업은 2000년도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7년 남북총리회담 시 합의된 ‘남북사회문화협력공동위원회’ 협의에 근거, 당국 간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민족문화유산 관련, 정부 부처 간 ‘업무협약체’를 구성한 바 있다. 문화재청이 이러한 문화유산 남북교류협력의 총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무적

76) 광재성, 유네스코 ‘문화와 발전’ 담론과 문화유산 ODA의 중요성,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ODA의 방향과 전략(유네스코 문화유산 개도국 협력 전략세미나 자료), 문화재청-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 76면. - “대표적인 문화재청의 해외문화재 공적원조 사업으로는, 2008년 베트남 후에 황성 디지털 복원, 2009년 호권 디지털 복원, 하노이 구도심 주민 참여형 보존체계 확립을 위한 워크숍 개최, 2009년과 2010년 캄보디아와 스리랑카 등에 필요한 문화재 보존처리 장비 제공, 2010년과 2011년 몽골 및 라오스의 무형문화재 제도 구축, 세계기록유산 등재지원 워크숍 등이 대표적이다.”

77) 유재은, 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국제협력(ACPCS) 사업의 현황과 전망,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ODA의 방향과 전략(유네스코 문화유산 개도국 협력 전략세미나 자료), 문화재청-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 50면.

으로는 ‘남북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행정운영을 하고 있다⁷⁸⁾.

남북문화교류란 문화적인 측면에서 민족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라는 데에 그 중심적 의미를 부여 할 수 있을 것이다.⁷⁹⁾

문화 분야에서도 특히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문화유산 부문은, 분단 이후 남과 북의 상이하게 발전된 사회 환경적 문화의 상이성 하에서도 여전히 공유하고 있는 민족 문화적 뿌리이자 문화적 공통분모라고 할 수 있다.⁸⁰⁾ 또한 이상에서와 같은 남북이 처하고 있는 민족의 분단이라는 특수한 환경적 상황에 대한 통일을 위한 교류의 관점뿐만이 아닌 학술적으로도 사업의 진행을 통하여 고려의 왕성유적인 개성만월대 발굴조사는 부족한 고려사 관련 자료를 발굴·확충함으로써 역사연구의 공백을 메우는 성과를 거두었고⁸¹⁾ 이후 이와 같은 공동 조사와 실태 파악 등의 활동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2002년부터 시작된 북한 문화재와 관련자료 등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전시는 물론 유네스코에 신탁기금을 출연, 북한문화재 보호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북한은 2004년, 처음으로 유네스코에서 관할하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고구려 벽화 무덤을 등재한 바

78) 박성진,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통한 남북 문화유산 교류협력 방안, 2014년 제1차 통일문화정책포럼, 12면- “그러나 이와 같은 실무적 추진체계에 대하여 남북 문화유산 교류와 민족문화유산의 보존·활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략적 설계가 필요하며, 다양한 사업주체의 역할을 기능적으로 분배하지 못할 경우 질적 성장 저하 및 과도한 경쟁을 유발, 남북공동조사의 본질을 훼손시킬 우려가 높다”는 평가를 아울러 받고 있다.

79) 이춘길, 남북한 문화유산 교류의 방도와 전망, 사회과학연구 제14권, 안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163면.

80) 이춘길, 남북한 문화유산 교류의 방도와 전망, 사회과학연구 제14권, 안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164면.

81) 송인범, 우리나라 문화재정책의 현황과 과제, 백제문화 제40집, 공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02., 81면.

있으며, 뒤이어 개성 역사지구(문화유산)를 비롯한 평양 역사지구(문화유산), 금강산과 주변의 역사지구(복합유산), 묘향산과 주변의 역사지구(복합유산), 구장동굴(자연유산), 칠보산(자연유산) 등 6곳의 유적을 세계유산의 잠정 목록에 등재하여 놓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세계기념물유적협회(ICOMOS) 한국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이들 유적이 성공적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⁸²⁾

82) 하문식, 북한의 문화재관리와 남북 교류, 정신문화연구 제30권 제1호 통권106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295~298면.

제 3 장 문화유산의 세계화 관련 국제협약 및 주요국가의 관련 법제 및 운영 현황

제 1 절 국제협약⁸³⁾

국제기구로서 문화유산보호를 위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기구는 ‘유네스코’(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이다.⁸⁴⁾ 이러한 국제기구가 중심이 되어 전개되고 있는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련한 국제협약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전개되어져 왔으며 이하에서 그 주요내용을 개관한다.⁸⁵⁾

【문화유산보호에 관한 주요 국제협약⁸⁶⁾】

연 도	제정기구	문서명	가입 여부
1954	유네스코	전시문화재보호협약(헤이그협약)	미가입

83) 이러한 국가 간 협약에 있어서는 관련 해당 2개국 사이의 양자간 협약(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등)의 형태도 존재하나, 본 고에서는 다자간 협약에 한하여 논한다.

84) 정상우/정필운, 국제협약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호 법제도의 과제, 법과 정책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1., 1071면.

85) 정상우/정필운, 국제협약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호 법제도의 과제, 법과 정책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1., 1072~1073면. - “우리나라에는 1950년 6월 14일부터 유네스코 회원국이 되었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ICPRCP(문화재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의 경우 1989년부터 위원국으로 활동해 왔고, ICCROM(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국제문화재보존복원센터)에는 1968년 7월 22일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ICOMOS(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와 관련하여서는 1998년 국가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86) 정상우/정필운, 국제협약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호 법제도의 과제, 법과 정책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1., 1075면.

연 도	제정기구	문서명	가입 여부
1970	유네스코	문화재불법밀반출 및 소유권 양도 금지 협약	가 입
1972	유네스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 (세계유산협약)	가 입
1995	UNIDROIT	문화재반환협약(유니드로와 협약)	미가입
2001	유네스코	수중문화유산보호협약	미가입
2003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가 입

1. 헤이그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협약
(Hagu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with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1954)⁸⁷⁾

동 협약은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무력 분쟁의 기간을 통하여 전쟁 참여국 자신은 물론 전 인류적 차원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화유산의 대량 파괴에 따른 반성과 향후 이와 같은 무력 분쟁의 발발 시에도 문화유산의 보호와 현상보존에 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1954년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채택되었다. 동 협약의 구성은 협약과 제1의정서 및 제2의정서로 이루어져 있고, 협약 시행을 위한 규칙과 아울러 구성되며 전쟁 등 무력충돌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화재의 파괴 등에 대한 대책으로서 문화재 보호에 가장 큰 중점을 둔 최초의 국제적 조약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87) 송호영/김지현, 문화재환수관련 국내의 규범 및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970년 UNESCO협약과 1995년 UNIDROIT협약을 중심으로, 유네스코정책연구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52면.

동 협약에 따라 체약국은 평시에 문화재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제3조), 자국의 영토 내에 존재하는 문화재를 존중하여야 한다(제4조). 특히 등록부에 기재된 특수 문화재가 등록된 때로부터 어떠한 적대행위도 취하지 않아야 하고 불가침성을 보장하여야 하며(제9조), 문화재 식별의 용이성을 위하여 특수표식을 부착한 특수보호 문화재 수송에 대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⁸⁸⁾

2013년 11월 현재, 협약에는 126개 국가가 가입을 하고 있으며,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현재 협약 및 제1의정서와 제2의정서 어디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

2.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1970)

동 협약은 1970년 11월 14일 제16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2013년 11월 현재, 동 협약에는 124개 국가가 가입하였으며, 미국이 1983년에, 프랑스는 1997년에, 일본과 영국이 2002년에, 스위스가 2003년에, 독일은 2007년, 네덜란드는 2009년에 가입하였다. 우리나라는 1983년 2월 14일 가입하였다.⁸⁹⁾

동 협약은 전문과 함께 총2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규정내용상의 특징으로는 문화재가 가지는 사회공공재적 성격을 새로이 인식하여, 사법상의 입법체계 보다는 공공 규제적 측면을 강조하여 규정하고자 한 점이라 고려된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88) 정상우/정필운, 국제협약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호 법제도의 과제, 법과 정책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1., 1079면.

89) 송호영/김지현, 문화재환수관련 국내의 규범 및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970년 UNESCO협약과 1995년 UNIDROIT협약을 중심으로, 유네스코정책연구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52면.

- ① 협약을 위반한 문화재 반·출입 및 소유권의 양도를 불법한 것으로 천명하고(제3조)⁹⁰⁾,
- ② 문화재보호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설립하고 보호대상인 문화재를 목록화하며(제5조),
- ③ 문화재의 반출증명서 제도를 도입하며(제6조),
- ④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반입을 금지하며(제7조),
- ⑤ 문화재의 불법한 반·출입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형벌 및 행정적 제재를 가하며(제8조),
- ⑥ 협약상의 조치를 위해 국제적인 공조를 취하며(제9조),
- ⑦ 외국군대 점령시 강제적인 문화재이전을 불법한 것으로 간주한다.(제11조)⁹¹⁾

협약의 주요규정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본 협약은 은 문화재의 불법반출에 대한 규제와 환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긍정적 측면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 UNESCO협약은 대부분의 규정이 자기 집행적(self-executing) 성격을 결여하고 있어서 협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체약국의 국내법

90) 송호영/김지현, 문화재환수관련 국내외 규범 및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970년 UNESCO협약과 1995년 UNIDROIT협약을 중심으로, 유네스코정책연구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107면 - “특히 동 협약은 도난문화재 및 반출 문화재의 효과적인 반환을 위해 종래 대륙법계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민사법상 제도인 선의취득(good faith aquisition; Eigentumserwerb kraft guten Glaubens)을 부정하고 점유자로 하여금 문화재의 반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협약 제3조 제1항 및 제5조). 이러한 규정은 성격상 민사실체법적 규범으로써 체약국에게 문화재반환에 관한 통일된 민사법적 규범을 강제함으로써 문화재의 도난이나 불법반출을 제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민사법규의 속성을 가진 협약규정들이 직접적으로 체약국의 규범 속으로 개입·적용됨으로 말미암아 각 국가들마다 가지고 있는 법률제도와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91) 송호영/김지현, 문화재환수관련 국내외 규범 및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970년 UNESCO협약과 1995년 UNIDROIT협약을 중심으로, 유네스코정책연구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48면.

상 입법조치가 있어야만 한다. 다시 말하자면 UNESCO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당사국이 협약내용을 국내법상으로 입법화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며, UNESCO협약 그 자체에 기해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를 막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둘째, 협약의 국내법적 이행과 관련하여 체약국들은 자국이 처한 상황이나 국내법상 제한 등을 고려하여 협약 상 규정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마다 협약을 받아들이는 내용이나 수준이 통일되지 않아 협약이 추구하는 문화재의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셋째, UNESCO협약 제7조 (b) (i)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물관 등의 물품목록에 기록된 문화재에 한해서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록에는 없지만 가치 있는 문화재의 반입은 막을 수가 없다.

넷째, UNESCO협약은 공법적 접근을 하였기 때문에 선의취득과 같은 사법적 규율을 명확히 담아낼 수 없는 한계가 상존한다는 것이다.”⁹²⁾

3.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1972년 11월 16일, 제17차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동 협약은 총 8장 38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유산등재 제도의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하겠다.⁹³⁾

92) 송호영/김지현, 문화재환수관련 국내의 규범 및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970년 UNESCO협약과 1995년 UNIDROIT협약을 중심으로, 유네스코정책연구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49면.

93) 정상우/정필운, 국제협약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호 법제도의 과제, 법과 정책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1., 1084-1085면.

동 협약은 그 목적상 ‘문화유산’이란 개념과 ‘자연유산’이란 개념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체약국은 자국 영토 내에 위치하고 있는 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호가 국제사회 전체의 의무인 것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세계유산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구로서 정부간위원회(세계유산위원회)를 유네스코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제8조 이하), 국제기구 간 다각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계유산등재 제도를 신설하면서, 세계유산위원회가 제공하는 지원의 형태를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국제적 원조를 위하여 ‘세계유산기금’을 설립하였다(제15조 이하).⁹⁴⁾

4.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turn of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유네스코가 1970년 채택한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의 특징은 불법한 문화유산의 수입, 수출 및 소유권 이전 등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공법적 규제에 있다. 그러나 본 협약이 갖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1995년, 국제사법통일연구소(UNIDROIT)에 의하여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95년 협약 역시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없는 한계성으로 인하여 1970년 협약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13개국만이 당사국으로 비준, 동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⁹⁵⁾

94) 정상우/정필운, 국제협약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호 법제도의 과제, 법과 정책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1., 1085면.

95) 이덕인, 불법유출 문화유산에 대한 형사법적 보호, 비교형사법연구 제13권 제2호, 비교형사법연구, 2010., 190~ 191면.; 손경한, 문화재환수협약의 개요와 한국의 대응 방안, 국제사법연구 제15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09, 221면.- “2010. 2. 현재 본협

1995년 협약은 당사국의 국내법 중 (선의취득과 관련된) 사법규정(제2장) 및 행정법규정(제3장)의 통일을 시도하고 있다.⁹⁶⁾ 또한 1970년 협약과는 달리 1995년 협약은 자기 집행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1995년 협약은 1970년 협약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주제를 규율하면서 후자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동시에 당사국간에 통일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서로 보충적인 관계(complementarity)에 있다고 볼 수 있다⁹⁷⁾.

동 협약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약에는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러시아, 중국 등 30개국이 가입하였다. 그러나 미국, 영국, 일본, 심지어는 독일도 아직 가입하지 아니하여 세계적으로 규범력 있는 국제조약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96) 이재경, 불법반출문화재의 반환청구 - 반환청구의 요건과 절차 -, 국제사법연구 제15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09., 266면.- “불법적으로 수출된 문화재를 원소유국에 반환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던 1970년 협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1995년 협약의 적용대상으로서 “도난문화재”와 함께 “불법반출문화재”도 포함시키고 있다. 불법반출문화재는 체약국의 문화유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문화재 반출규제법을 위반해서 체약국의 영토에서 불법적으로 이전된 문화재를 의미하므로 도난으로 인하여 해당 문화재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도난 문화재와 구별된다.“

97) 이근관, 동아시아지역의 문화재 보호 및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법적 고찰, 서울대학교법학 제44권(3호) 통권 제128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121면.; 송호영/김지현, 문화재환수관련 국내외 규범 및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970년 UNESCO협약과 1995년 UNIDROIT협약을 중심으로, 유네스코정책연구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50면.- “UNIDROIT협약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UNESCO협약의 의미나 기능이 줄어들거나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UNESCO협약은 불법문화재의 ‘반·출입 및 소유권의 양도’를 금지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UNIDROIT협약은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양 협약의 지향점이 다를 뿐만 아니라, UNESCO 협약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불법문화재의 반·출입을 막기 위한 ‘행정적’ 조치를 주된 규정으로 삼고 있는데 반해, UNIDROIT협약은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소유자’나 ‘국가’가 직접 문화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 협약은 서로 보충적인 관계에 있는 셈이다. 1995년 UNIDROIT협약은 1970년 협약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70년 협약상의 규정들을 구체화하여 특히 도난당하거나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최소한의 통일적인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의 ‘특별한 국가지정’ 문화재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개인에 대하여서도 문화재 반환 및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둘째, 도난문화재의 원상회복 및 불법반출문화재의 반환에서 선의의 점유자를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셋째, 1970년 유네스코 협약과 마찬가지로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협약 발효 이전에 원래의 문화재 보유국을 이탈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협약 이전에 이루어진 불법거래가 합법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문화재를 반환할 지위에 있는 프랑스 등의 국가가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반환 대상 문화재도 50년 이내인 점에서 실효성이 적다는 한계도 있다.”⁹⁸⁾

5. 무형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논의는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바 있으며,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개념 또한 계속 변화해 왔다.⁹⁹⁾

98) 정상우/정필운, 국제협약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호 법제도의 과제, 법과 정책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1., 1082면.; 손경한, 문화재환수협약의 개요와 한국의 대응방안, 국제사법연구 제15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09, 204면. - “본 협약 이후에도 1999년 문화재거래상을 위한 직업윤리강령 (International Code of Ethics for Dealers in Cultural Property), 1999. 1. 유네스코정부간위원회 (UNESCO Intergovernmental Committee)에서 채택한 문화재거래상을 위한 직업윤리강령(International Code of Ethics for Dealers in Cultural Property)15), 2001년 수중문화재보호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16), 2003년 무형문화유산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이 각각 성립, 발효하였다.”

99) 박계리, 동아시아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와 유네스코 협약, 미술사논단 통권34호, 한국미술연구소, 2012, 303면.- “유네스코는 1997년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무형문화

이러한 연혁적 특성을 가지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1966년 ‘국제 문화협력 원칙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 1989년 ‘전통문화 및 민속 보호 권고(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 2001년 세계문화다양성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등을 거쳐, 2003년 채택된 ‘무형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한 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을 “공동체, 집단 및 개인들이 그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관행(practices), 표출(representations), 표현(expressions), 지식(knowledge) 및 기술(skills)과, 이와 관련된 도구(instruments), 사물(objects), 유물(artefacts) 및 문화 공간(cultural spaces)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¹⁰⁰⁾

동 협약의 구성은 전문과 총 9개 장 40개 조로 그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유네스코 산하에 무형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정부간위원회 설립(제5조-제10조), 모든 당사국은 무형문화유산의 국내적 보호를 위하여 각 영토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제11조), 무형문화유산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서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을 작성하고(제16조), 긴급 보전이 필요한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작성하며(제17조), 무형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활동하여야 한다(제18조).¹⁰¹⁾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프로그램 시행을 필두로, 2001년, 2003년, 2005년 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70개국 90건의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을 지정하였는데, 이는 일본과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제도를 모델로 한 것이었다.”

100) 이철남,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과 저작권 관리방향 -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사례를 중심으로 -, 강원법학 제40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 65~ 66면.

101) 이영진, 세계기록유산의 등록과 보존을 위한 법적 문제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 18권(1호),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7면.

제 2 절 국제규범에 대한 대응방안

이상에서 문화재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차원의 주요 국제협약의 내용을 개관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아래 표에서와 같은 대응을 전개하여 왔으며,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국제협약에 따른 국내법의 이행과정과 논점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문화재 관련 국제협약 현황¹⁰²⁾】

협약명	채택일	가입일	가입 국가	운영기구 및 본부 소재지	활동현황	비 고
세계문화 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1972.11.16. 제17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파리	88.9.14	187	세계유산 위원회 (World Heritage Committee), 파리	○97.10월 위원국 피선 (임기 6년): 1997~2003 ○98년 부의장국 (임기 1년) ○05.10월 위원국 피선 (임기 4년): 2005~2009 ○08년 부의장국 (임기 1년)	98.7.22 북한가입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	1970.11.14. 제1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파리	83.2.14	118	문화재반환 촉진을 위한 정부간 위원회 (ICPRCP), 파리	○89, 93, 97, 01, 05년, 09년 위원 국 피선 (임기 4년): 2009~2013년 ○가입국: 이탈리아, 북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문화재 불 법 거 래 방지 등에 중점 지정문화재 대상, 비 소 급 효, 중재 및 조정 권한

102)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주요업무 통계자료집, 문화재청, 2012. 12. 31., 62면.

협약명	채택일	가입일	가입 국가	운영기구 및 본부 소재지	활동현황	비 고
					(영국, 독일 미가입)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에 관한 유니드로 와 협약	1995.6.24. 이탈리아, 로마	가입 검토	30	1970년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에의 한계에서 등장	○반입국의 참가 유도를 위해 도난 불법반출 문화재 반환원칙 과 선의취득 자 보호개념 조화 (반환청구권 소멸시효제도, 선의취득자 변 산제도)	가입국: 중국,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일본, 영국, 북한은 미가입) 개인소유문 화재에 확대 적용
무력 충돌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	1954.5.14. 네덜란드, 헤이그	가입 검토	123			주요문화재 를 ‘문화재 국제 등기 부’에 등록, 등록문화재 에 대해 특 수표지 부착 미국 (09.3.13), 일본 (07.2.19), 중국 (00.5.1) 등 가입
수중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	2001.11.2. 제 31차 유네스코 총회	가입 검토	26		○현장 운용규정에 반하는 방법으로 발굴 또는 복구된 수중문화유산의 자국영토 반입시 압수 가능	최소한 100년 이상 이 경과된 인간존재의 모든 흔적 을 의미함

제 3 장 문화유산의 세계화 관련 국제협약 및 주요국가의 관련 법제 및 운영 현황

협약명	채택일	가입일	가입 국가	운영기구 및 본부 소재지	활동현황	비 고
국제 문화재 보존복구 연구센터 규약	1956.12.5. 인도 뉴델리에 서 채택	68.7.22	126	국제 문화재 보존복구 연구센터 (ICCRROM), 로마	○79년, 00년, 03년 이사 (임기 4년) 및 83년 부의장 피선	
무형문화 유산 보호협약	2003.10.17. 제32차 유네스코 총회	05.2.9	145	무형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 위원회, 파리	○08년 위원국 피선 (임기 4년): 2008년~2012년 ○08년 심사 보조기구 피선 (임기 2년): 2008년~2010년 ○10년 심사	무형문화 유산 대표 목록과 긴급한 보 호를 요하 는 무형 문 화 유 산 목록 작성 제도 도입 인 류 구 전 및 무형 유 산 결 작 등 재 유 산 통합

1. 1970년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협약은 제1조에서 문화재의 범주를 규정하면서, “--- 고고학, 선사학, 역사학, 문학, 예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함으로써 종교적 또는 세속적 근거에서 각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정된 재산으로, ---”라고 규정하여 소위 특별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입법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 또한 협약 제6조는 체약국으로 하여금 반출증명서 제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반·출입되는 문화재에 대한 규범적 차원에 있어서의 적법 혹은 불법성을 보다 수월하게 파악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제도의 입법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¹⁰³⁾

2. 1972년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동 협약은 체약국으로 하여금 규정내용의 이행을 위한 별도의 입법적 노력, 즉 체약국 자체의 이행입법의 규정화를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 문화재보호법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등을 통하여 이에 상응하는 규정을 입법화하고 있는 것이다.¹⁰⁴⁾

- “**제10조(세계유산등의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등(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을 유지·관리하고,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등의 현황 및 보존상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점검(「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정기보고 의무 이행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②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에 필요한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103) 송호영/김지현, 문화재환수관련 국내외 규범 및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970년 UNESCO협약과 1995년 UNIDROIT협약을 중심으로, 유네스코정책연구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104면~106면 요약정리.

104) 정상우/정필운, 국제협약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호 법제도의 과제, 법과 정책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1. 09., 1085면.

다만 위에서 보여 지고 있는 바와 같은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상의 관련 규정이 가지는 권고적 성격으로 인하여 세계문화유산의 등재 및 이를 위한 사전-사후적인 대상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지원 등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질 수 있음에 향후 이에 대한 보완적 검토와 개선방안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3. 1995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에 관한 협약

동 협약은 1970년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는 달리 자기 집행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국내적 이행을 위한 국내입법이 불필요하다고 한다.¹⁰⁵⁾ 때문에 본 협약의 주요규정에 대한 검토가 보다 요청되어지는 것이다.

동 협약의 경우도 1970년 유네스코협약에서와 마찬가지로, 협약이 소급적용 되지 않고 협약의 발효이후에 발생한 도난 또는 불법반출 문화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식민지시대 문화재의 피탈을 경험한 나라들로서는 동 협약을 통해 과거 문화재의 환수를 기대하기 어렵다.¹⁰⁶⁾ 또한 동 협약의 두드러진 특징으로서 문화재의 도난과 문화재의 불법반출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경우, 비록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 제20조(외국문화재보호)에서 외국문화재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는 하나, 문제는 동 규정은 1995년 UNIDROIT 협약이 상정하는 “불법반출” 문화재에 대한 조치는 규정하고 있지만, “도난” 문화재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¹⁰⁷⁾

105) 이재경, 불법반출문화재의 반환청구 - 반환청구의 요건과 절차 -, 국제사법연구 제15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09., 265면.

106) 송호영/김지현, 문화재환수관련 국내외 규범 및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970년 UNESCO협약과 1995년 UNIDROIT협약을 중심으로, 유네스코정책연구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108면

107) 송호영/김지현, 문화재환수관련 국내외 규범 및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4. 2003년 무형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한 협약

동 협약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협약 제2조의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와 범주에 대한 규정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전제하고 있는 문화재의 개념과 상이하기 때문이다.¹⁰⁸⁾ 최근 선행 연구 등에서는 이에 대하여, ①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보다 협약이 보다 넓은 문화재 개념을 설정하고 있는 바, 국제관계 등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무형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 ② 현행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이 취하고 있는 원형보존 중심의 법리적 체계를 탈피, 문화재의 미래적 활용까지 고려한 국제 규범수준의 보호방식이 반영된 입법체계로 전환할 필요, ③ 무형문화재 지원방식 개선 등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¹⁰⁹⁾

연구-1970년 UNESCO협약과 1995년 UNIDROIT협약을 중심으로, 유네스코정책연구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110면.

108) 박계리, 동아시아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와 유네스코 협약, 미술사논단 통권34호, 한국미술연구소, 2012., 303면.

109) 정상우/정필운, 국제협약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호 법제도의 과제, 법과 정책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1., 1090 - 1091면.

제 4 장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 분석

제 1 절 관련 법제 현황

문화유산의 세계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제는 문화재보호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는 문화재보호법을 필두로 하여 문화유산의 국제교류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내지 민간 차원의 교류활동에 진흥에 관한 근거를 각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법제를 구성하는 주요 법률과 관련 규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문화재보호법

(1) 입법목적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제는 1910년 향교재산관리규정의 제정을 시작으로 하여 1916년의 고적급유물보존규칙 제정, 1933년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제정을 거쳐 정부 수립 후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으로 종합된 바 있으나, 이는 문화재보호의 법제적 기반을 공고히 한 것이기는 하나 당시의 일본법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만들어진 졸속법률이었다고 그 후 문제점의 보완, 사회적 변화의 반영 등을 위해 40여 차례의 개정을 겪으면서¹¹⁰⁾ 8장 107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매우 복잡한 입법구성형태를 취하고 있다.¹¹¹⁾

110) 송인범, 우리나라 문화재정책의 현황과 과제, 백제문화 제40집,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09., 85면.

111) 이러한 관점은 이덕인, 불법유출 문화유산에 대한 형사법적 보호, 비교형사법연

특히 2010년 전면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기존 법률상 미비했던 항목이나 하위법령에 규정되어있던 문화재위원의 자격,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기준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지정문화재의 해제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문화재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등의 권리를 강화하여 문화재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청취, 기초조사 시 소유자·관리자의 사전 동의 규정, 지정문화재 공개 제한 시 소유자등의 의견수렴 및 통보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¹¹²⁾

(2) 관련 주요내용¹¹³⁾

제 3 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구 제13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1., 197~ 198면.-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은 연혁적으로 볼 때 1950년 5월 30일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많은 부분에서 답습하고 있으며, 법제의 발전 역시 전반적으로 이에 구속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더욱이 이 법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조문이 문제되기도 하였고, 문화유산의 발견자나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에 대해 국가가 어떠한 편익도 제공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낫다는 국민적 정서를 불러와, 경우에 따라서는 암시장에 문화유산을 불법 유통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어 ‘문화유산파괴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즉, 문화유산 보호에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포상과 장려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규정의 내용은 사유에 속하는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국가에 의한 통제 일변도의 강제적 감독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전시용 규범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오늘날 국제규범은 자국의 문화유산과 외국의 문화유산을 구별하지 않고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규정하여 동일한 정도로 보호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지극히 국수적인 관점에서 국내 문화유산의 보호만을 고집하는 편향된 규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112) 우성기, 문화재의 지속가능한 보호를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 행정법연구 제31호,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1., 2~3면.

113)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B%AC%B8%ED%99%94%EC%9E%AC%EB%B3%B4%ED%98%B8%EB%B2%95&x=0&y=0#liBgcolor1>

제9조(한국문화재단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연·전시 등 무형문화재 활동 지원 및 진흥
2. 문화재 관련 교육, 출판, 학술조사·연구 및 콘텐츠 개발·활용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
4. 전통 문화상품·음식·혼례 등의 개발·보급 및 편의시설 등의 운영
5. 문화재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교류
6. 문화재 보호운동의 지원
7. 전통문화행사의 복원 및 재현
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 ⑦ 생략

제17조(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① 국가는 문화재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문화재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환, 인력교류, 공동조사·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문화재분야 협력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2(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①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이하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 ⑥ 생략

제18조(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① 국가는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문화재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또는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의 우수한 문화재를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신청 대상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유네스코의 규정을 참작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를 비롯한 인류 문화재의 보존과 문화재의 국외 선양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외국문화재의 보호) ①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국가 간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가입된 외국의 법령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보호되는 문화재(이하 “외국문화재”라 한다)는 조약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내로 반입하려 하거나 이미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해당 반출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문화재를 유치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문화재를 유치하면 그 외국문화재를

박물관 등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관 중인 외국문화재가 그 반출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반출된 것임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 외국문화재가 불법반출된 것임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반출국이 그 문화재를 회수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문화재청장은 외국문화재의 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자국에서 불법반출된 것임을 증명하고 조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약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문화재가 반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비상시의 문화재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문화재와 국유 외의 지정문화재 및 제32조에 따른 비지정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화(戰禍)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①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재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 등으로 제작한 경우
2.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또는 관람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의 경우

제67조(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환수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8조(국외소재문화재의 조사·연구) ①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보존·관리 실태, 반출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박물관,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정보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9조의2(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재청장의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정책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 관련 중요 정책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 및 자문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설립) ①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과 관련한 각종 전략·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문화재와 관련한 제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하 “국외문화재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 ⑤ 생략

⑥ 국외문화재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
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보호·활용에 관한 연구
3. 국외소재문화재의 취득 및 보존·관리
4.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교류 및 국제연대 강화
5.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관련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6. 외국박물관 한국실 운영 지원
7. 한국담당 학예사의 파견 및 교육 훈련
8. 국외소재문화재의 보존처리 및 홍보 지원
9. 국외문화재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 이 경우 수익사업은 문화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그 밖에 국외문화재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⑦ 생략

위의 현행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유산의 세계화와 관련한 주요 규정을 통하여 인식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문화재보호법은 우선적으로 동적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음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문화재 원형보존 중심 원칙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국제협약상의 제 규정 등에서 보여지는 문화재 가치 중심적 활용과 보존의 인식경향과는 다소 상이함이 나타나는 것이라 하겠다. 때문에 이러한 문화재 정책의 중요원칙과 보호와 활용의 대상으로서의 문화재 개념에 대한 인식 확대에 따른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 법률은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주관적으로 추진할 조직으로서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재단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별로는 제8장(국외소재문화재)이하에서 국외소재 문화재의 환수와 활용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두고 있다. 아울러 남북문화교류 및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본 법률의 제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은 문화재 국제교류 협력사업의 근거를 형성하며 문화재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문화재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환, 인력교류, 공동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2. 한국국제교류재단법

(1) 입법목적

외교통상부는 동법 상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 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다.

(2) 관련 주요내용¹¹⁴⁾

제 6 조(사업) ① 재단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가
2.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3. 국외 한국 연구의 지원 및 연구 결과의 보급
4.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모든 활동
5.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
6. 삭 제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14)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B%AC%B8%ED%99%94%EC%9E%AC%EB%B3%B4%ED%98%B8%EB%B2%95&x=0&y=0#liBgcolor0>

② 재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위 제6조 제1항 각호 규정에 근거,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국제교류 재단의 모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3. 문화예술진흥법

(1) 입법목적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주요내용¹¹⁵⁾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을

115)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B%AC%B8%ED%99%94%EC%9E%AC%EB%B3%B4%ED%98%B8%EB%B2%95&x=0&y=0#liBgcolor0>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위 제18조 제4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본 규정에 근거, 국제문화예술 교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모든 국제 문화예술 교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4. 문화산업진흥기본법

(1) 입법목적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주요내용¹¹⁶⁾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정부는 문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제영상제·견본시장 참여 및 국내 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16)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B%AC%B8%ED%99%94%EC%9E%AC%EB%B3%B4%ED%98%B8%EB%B2%95&x=0&y=0#liBgcolor0>

위 제20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제영상제·견본시장 참여 및 국내 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5. 콘텐츠산업진흥법

(1) 입법목적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주요내용¹¹⁷⁾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콘텐츠의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2. 외국인의 투자 유치
3. 국제시상식·견본시장·전시회·시연회 등 참여 및 국내 유치
4. 콘텐츠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5. 콘텐츠의 해외 현지화 지원
6. 콘텐츠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
7. 국내외 기술협력 및 인적 교류
8. 콘텐츠 관련 국제표준화
9.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

117)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B%AC%B8%ED%99%94%EC%9E%AC%EB%B3%B4%ED%98%B8%EB%B2%95&x=0&y=0#liBgcolor0>

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콘텐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콘텐츠의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제시상식·견본시장·전시회·시연회 등 참여 및 국내 유치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6.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1) 입법목적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창조·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주요내용¹¹⁸⁾

제26조(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형성) 국가 및 광주광역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 및 협력기반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 및 아시아 각국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인력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2. 문화교류를 위한 아시아 각국의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관련전문가, 공무원, 청소년, 교사, 시민 등의 초청 및 파견 등 활동 지원

118)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B%AC%B8%ED%99%94%EC%9E%AC%EB%B3%B4%ED%98%B8%EB%B2%95&x=0&y=0#liBgcolor0>

3.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제고와 협력을 위한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교류 및 회의의 개최·유치 지원
4. 아시아 문화예술인 거주시설 등 아시아인 상호간의 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운영 지원
5. 외국 도시·기업·단체와의 문화교류 및 문화산업의 협력 지원
6. 그 밖에 국제 및 아시아 문화교류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위 제26조 각호의 아시아문화 교류 사업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및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 및 협력기반형성을 위한 각종 교류활동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7.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 입법목적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 산업을 육성·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주요내용¹¹⁹⁾

제11조(국제협력의 촉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및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회의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국제회의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 교류

119)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B%AC%B8%ED%99%94%EC%9E%AC%EB%B3%B4%ED%98%B8%EB%B2%95&x=0&y=0#liBgcolor1>

3. 외국의 국제회의 관련 기관·단체의 국내 유치
4. 그 밖에 국제회의 육성기반의 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위 제11조 각호의 국제협력 사업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회의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국제회의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 교류, 외국의 국제회의 관련 기관·단체의 국내 유치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8. 영상진흥기본법

(1) 입법목적

영상문화(映像文化)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주요내용¹²⁰⁾

제14조 (국제 교류 및 협력) 정부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보 교류 및 공동 조사·연구
2. 영상산업에 관한 기술 협력
3. 영상물의 공동 제작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위 제1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영상문화

120)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B%AC%B8%ED%99%94%EC%9E%AC%EB%B3%B4%ED%98%B8%EB%B2%95&x=0&y=0#liBgcolor0>

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보 교류 및 공동 조사·연구, 영상산업에 관한 기술 협력, 영상물의 공동 제작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9.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1) 입법목적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주요내용¹²¹⁾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유네스코 활동”이라 함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 국제협력의 증진과 정보 및 인적 교류
2.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 연구 및 사업 지원
3. 그 밖에 유네스코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제 4 조(유네스코 활동을 위한 국제협력)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은 다음 각 호의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1. 유네스코
2.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 전문기구
3. 유네스코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의 정부와 회원국이 유네스코 헌장 제7조에 따라 설립한 국가위원회

121)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B%AC%B8%ED%99%94%EC%9E%AC%EB%B3%B4%ED%98%B8%EB%B2%95&x=0&y=0#liBgcolor0>

4. 대한민국과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단체
5.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단체 및 회원국의 기관·단체

제 7 조(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설치) ① 유네스코 헌장 제7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을 촉진하고,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 전문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제 8 조(기능과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네스코 활동 관련 분야의 기관·단체와 개인의 유네스코 활동의 참여 진작
2.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수립, 국제 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건의·자문
3. 유네스코 총회에 제출할 의안의 작성, 유네스코 총회에 파견할 대표의 선정 등에 관한 심의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건의
4. 유네스코 총회 등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그 이행 방안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건의
5.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유네스코와 관련된 사업·활동의 수행과 그 조정
6. 유네스코 회관의 관리·운영과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7.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5인 및 사무총장 1인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미래창조과학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교부차관 1인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5.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제15조에 따른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서 선출하는 사람 1인
- ③ ~ ⑤ 생략

위 제2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유네스코 활동으로써의 교육·과학·문화 등 관련 분야 국제협력의 증진과 정보 및 인적 교류 등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1) 입법목적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¹²²⁾

제 3 조(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②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22)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B%AC%B8%ED%99%94%EC%9E%AC%EB%B3%B4%ED%98%B8%EB%B2%95&x=0&y=0#liBgcolor0>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제1항의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전문 인력의 양성) ①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분야별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행기관이 관리하는 분야별 전문 인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국가등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1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1) 입법목적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¹²³⁾

제 5 조(기금의 용도) ① ~ ② 생략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사업
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3.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4.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5.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6.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
7.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9.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10.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생략

제 2 절 문화유산 세계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의 전개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위한 종래의 관련 사업현황과 관련 법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양한 추진 주체와 관련 법률 등을 통하여 전개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이의 효율적 운영과 제도개선을 위한 요구 역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여건을 반영하여 최근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그 제안이유 및 본 연구의 주요

123)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B%AC%B8%ED%99%94%EC%9E%AC%EB%B3%B4%ED%98%B8%EB%B2%95&x=0&y=0#liBgcolor0>

대상에 따라 크게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위한 문화교류 활성화 관련 5개 법률안,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유산 관리 및 무형문화유산 진흥 관련 2개 법률안, 남북한 문화협력 관련 2개 법률안, 해외문화재 환수-활용 관련 3개 법률안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들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개관하고 종합하여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1. 문화교류 활성화 관련

(1)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법률안 (길정우의원 대표발의-2012.10.25)¹²⁴⁾

1) 제안이유

국제문화교류는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됨과 더불어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바, 정부에서는 국제문화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국제문화교류 업무의 수행체계를 살펴보면 부처별, 부서별로 분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없이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충분한 성과를 내기에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며, 관련 부처와 기관 간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총괄·조정 및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124)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법률안(길정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84, 2012., 1~3면.

2) 주요내용

1. 제정안은 국제문화교류의 효율적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2. 국제문화교류는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기관·단체,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개별 법률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 사업, 국제교류 사업 등의 활동으로 정의하였다(안 제2조).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의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국제문화교류진흥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안 제5조).
4. 국제문화교류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제문화교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안 제6조).
5. 국제문화교류의 증진과 우리나라의 문화홍보 등을 위하여 해외에 한국문화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국제문화교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원과 연계한 코리아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9조).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안 제10조).

(2) 국제문화교류진흥법안 (강창일의원 대표발의-2012.10.26.)¹²⁵⁾

1) 제안이유

정부의 국제문화교류업무가 장기적 비전이나 체계적인 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어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국제문화교류 업무의 총괄·조정기능이 미흡하고 종합계획이 미비한 가운데 각 부처 및 부서가 경쟁적으로 국제문화교류 업무를 유사·중복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예산낭비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내에서 국제문화협력, 국제공연예술 등 국제문화교류와 관련된 많은 부서들이 연계나 조정 없이 중복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정부가 국제문화교류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국제문화교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 중인 국제문화교류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체계적인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하도록 하는 등 이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국제문화교류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1. 이 법은 국제문화교류를 통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력을 높이고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였다(안 제4조).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계획을 포함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안 제5조).

125) 국제문화교류진흥법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309, 2012., 1~3면.

4. 국제문화교류 진흥 및 조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제문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한다(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 문화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의 해외지사 및 사무소를 연계한 코리아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리아센터의 설립,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등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4조 및 제15조).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국제문화교류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안 제20조).

(3)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 (박병석의원 대표발의-2013.10.28.)¹²⁶⁾

1) 제안이유

국제문화교류는 한국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계기이자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로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문화교류가 지니는 이러한 의의와 그 중요성에 비추어 현행 업무수행체계는 각 부처별 상호 연계나 조정이 미흡하여 업무의 유사성과 중복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이에 따른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가 국제문화교류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국제문화교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 중인 국제문화교류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진

126)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박병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7350, 2013., 1~3면.

흥원을 설립·운영하여 체계적인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하도록 하는 등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국제문화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1. 이 법은 국제문화교류 활동을 진흥하여 국가 간의 상호존중과 협력 및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세계에 알림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세계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2. 국제문화교류는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기관·단체,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개별 법률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 국제교류 등의 활동으로 정의하였다(안 제2조).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안 제5조 및 제6조).
4.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문화교류위원회를 두도록 한다(안 제7조).
5. 국가 간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였다(안 제10조).
6. 해외에서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국가홍보 등과 관련된 국제문화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리아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다(안 제11조).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를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및 유치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2조).

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정보의 원활한 공급·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정보 및 통계의 수집·분석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의 요청 및 제공 근거를 두었다(안 제13조).
9. 국제문화교류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에 필요한 정책 수립 및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과 국제문화교류 주간 설정, 포상 실시 근거를 두었다(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4) 공공외교의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안
(이재영의원 대표발의- 2012.8.17)¹²⁷⁾

1) 제안이유

최근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고 세계화·정보화 추세에 따라 공공외교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국가브랜드 제고, 소프트파워의 증진을 위하여 공공외교에 대한 국가적 전략목표를 명확히 하고 현재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 중인 공공외교의 조직 및 운영체계에 대하여 합리적인 일원화와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임. 미국을 비롯한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서구 유럽 국가의 경우에도 공공외교의 활성화를 통한 자국의 예술, 문화, 지식 등을 다른 나라에 널리 전파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이에 공공외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차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외국과의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고자 한다.

127) 공공외교의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안(李宰榮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209, 2012., 1~3면.

2) 주요내용

1. 공공외교를 외국의 정부만을 상대로 하던 전통적인 외교 방식에서 벗어나 예술, 지식, 미디어, 언어, 원조 등을 매개로 하여 외국의 국민 및 기관·단체와 직접 교류·협력하는 외교로 정의하였다(안 제2조).
2. 공공외교의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으로 공공외교위원회를 둔다(안 제6조).
3. 외교통상부장관은 공공외교의 활성화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공외교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한다(안 제7조).
4. 재외공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에 대한 공공외교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안 제8조).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예술교류 등을 하기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부문의 공공외교를 활성화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9조 및 제10조).
6. 다른 국가와의 교류·협력이나 외교적인 행사 및 사업 등을 위한 공공외교행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1조).
7.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안 제13조).

(5) 공공외교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안
(심재권의원 대표발의- 2013.2.4.)¹²⁸⁾

1) 제안이유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군사력과 경제력을 주축으로 하는 전통적인 “국력”에 바탕을 둔 정부 간 외교의 한계성이 여실이 드러났으며, 세계화·정보화·민주화 추세에 따라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전통적 강대국은 물론 중국, 일본 등도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정비와 막대한 재원 투입을 통하여 활발한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와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외교에 대한 국가적 전략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공공외교의 조직 및 운영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공공외교의 활성화 및 증진을 위해 공공외교를 시행하고 있는 각 기관 간 정책조율과 협조를 활성화하고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주요내용

1. 공공외교는 정부·지자체 또는 민간이 문화, 예술, 지식, 정보, 미디어, 언어, 가치, 역사, 정책, 원조 등을 매개로 하여 외국의 국민 및 기관·단체와 직접 교류·협력하는 외교활동으로 정의하였다(안 제2조).
2. 외교통상부장관은 공공외교의 활성화 및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한다(안 제6조).

128) 공공외교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안(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599, 2013., 1~2면.

3. 공공외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공공외교위원회를 두도록 한다(안 제7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국제교류 협력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부문의 공공외교를 활성화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0조 및 제11조).
5.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기본계획 추진 상황 및 시행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안 제13조).

2.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유산 관리 및 무형문화유산 진흥 관련

(1)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조해진의원 대표발의-2012.11.7.)¹²⁹⁾

1) 제안이유

2003년 10월 17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이 제정됨에 따라 회원국으로 가입한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보호 제도 및 정책의 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던 중에 2011년 5월 중국이 조선족 ‘아리랑’을 자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발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둘러싼 치열한 국제적 경쟁에 직면하였다.

1962년 1월 10일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한민족의 전통생활 방식에 녹아있는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한 결과, 도시화·산업화의 격랑 속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우리 전통문화를 보호하는 데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그러나 무형문화재 범위의 협소화와 무형문화재 원형유지 원칙으로 인한 창조적 계승·발전

129) 박명수,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조해진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13.6., 1~7면.

저해, 전통공예품의 사회적 수요 저하로 인한 공예기술의 전승단절 위기 고조,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도제식 전수교육의 효용성 부족,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사회적 갈등 발생 등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법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를 유네스코의 기준에 맞추어 대폭 확대하고, 보전 및 진흥의 원칙을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한편, 대학을 통한 무형문화유산 전수교육 제도를 도입하여 전통 기술은 물론 현대적 디자인, 경영기법,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지식을 함께 학습함으로써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이라는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지는 것이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의 브랜드화, 전통공예품 인증·은행제 도입, 전승자의 창업·제작·유통 지원, 해외 전시·공연 등 국제교류 지원, 지식재산권의 적극적 보호 등 무형문화유산의 사회적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각종 진흥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 전승자의 전승 의욕을 고취시키고, 전통문화의 자생력을 높이는 한편 세계무형문화유산의 등재 확대를 통하여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세계 속에 널리 알리는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의 조속한 제정이 적극적으로 요청되어 진다.

2) 주요내용

1. 이 법은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국민의 문화적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를 전통적 공연, 공예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 등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사회적 의식, 전통적 놀이·축제 등의 범주로 확대함(안 제2조).

3.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의 기본원칙은 민족정체성 함양,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 무형문화유산 가치의 구현과 향상으로 함(안 제3조).
4.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5.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기존 문화재위원회와 구분되는 별도의 심의기구로 무형문화유산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6. 문화재청장은 시·도무형문화유산, 이북5도 무형문화유산 중에서 중요한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7.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을 긴급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8.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전승실태와 교육, 활동 현황에 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함(안 제17조).
9.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승교수, 전승단체 또는 전승공동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10.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수 중 전승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전승교수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11. 문화재청장은 전승교수 또는 전승단체 외에 이수자로서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중에서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12. 국가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전승교수 및 전승단체에게 전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6조)
13.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그 기량을 심사하여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27조).
14.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수교육을 받는 사람 중에서 전승교수 또는 전승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15.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수 또는 전승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국가무형문화유산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29조).
16.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유산 또는 시·도무형문화유산 중에서 대학을 통하여 전수교육이 필요한 종목을 선정하고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대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17.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무형문화유산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2조).
18.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19. 이북5도지사는 이북5도에서 전승되던 무형문화유산 중에서 국가 무형문화유산 또는 시·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이북5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2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공예품의 원재료 구입,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전승공동체의 전승 및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 등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2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거나 문화강좌를 설치하는 경우에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를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9조).
2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각종 행사 또는 축제에 무형문화유산 전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0조).
23. 문화재청장은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원재료, 제작공정 등의 기술개발 및 디자인·산업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24. 문화재청장은 인증심사를 거쳐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전승자가 제작한 상품에 대하여 무형문화유산 전통공예품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25. 문화재청장은 전통기술의 전승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우수성 홍보 등을 위하여 전통공예품은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2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유산 전승자의 창업·제작·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27. 국가는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통공연·예술 분야 무형문화유산의 해외공연 및 전통공예품의 해외전시·판매 등 무형문화유산의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함(안 제46조).
28.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유산의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47조).
29.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재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 48조).
30. 문화재청장은 국내의 무형문화유산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의 전승활동, 교육, 행사, 홍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31.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는 무형문화유산의 분포현황, 전승실태 등 관련기록을 녹음·촬영·속기 등의 방법으로 수집·작성하여 유지·보존하도록 함(안 제51조).
32.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전승 내역과 구성요소 등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국제특허협약에 따른 효력을 가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외국의 국제 특허 출원으로부터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도록 함(안 제52조).
3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등은 인간문화재의 전승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53조)

34. 누구든지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한 전승교수, 전승단체, 전승공동체, 명예전승교수,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를 제외하고는 그 지위를 사칭할 수 없도록 함(안 제54조).

(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대표발의- 2014.2.14)¹³⁰⁾

1) 제안이유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정식 등재 신청 최소 1년 전에 잠정목록에 등재되어야 가능하며, 잠정목록 등재 유산이 세계유산 등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의 엄격한 등재기준에 따라 해당 유산이 지닌 고유 가치를 보존·관리하여야 할 것이나 현행법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에 등재된 문화재만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 등을 하고 있어 세계유산 등의 등재 직전 단계인 잠정목록 등재 문화재는 세계유산 등의 등재를 위한 연구 사업 외에 추가적인 유지·관리 및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2) 주요내용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도 세계유산 등의 등재 이전부터 유지·관리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세계유산 등의 등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13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9379, 2014.,1~2면.

3. 남북한 문화협력 관련

(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 대표발의- 2014.4.2.)¹³¹⁾

1) 제안이유

중요무형문화재나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문화재에 대하여는 「이북5도 문화재 보호규정」에 근거하여 이북5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함경남도 ‘돈돌놀이’ 등 13개 종목이 지정되어 있으나, 다른 시·도지정 무형문화재보다는 지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어서 이들 종목의 전승이 매우 위태로운 상태이며, 특히 무형문화재 보유자 상당수가 월남 1세대 고령이어서 시급히 전승 환경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2) 주요내용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청장 등의 권고를 받아 시·도지사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도지정문화재 지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지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북5도 도지사가 ‘이북5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북한에서 전승하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민족문화의 계승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안 제70조제6항 후단 및 제7항·제8항 신설).

13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9997, 2014., 1~2면.

(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도중환의원 대표발의- 2014.6.19.)¹³²⁾

1) 제안이유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재기본계획에 문화재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문화재기본계획 수립 시 문화재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교류 및 협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안 제6조제1항제7호의3 신설).

2) 주요내용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4. 해외문화재 환수- 활용 관련

(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유승희의원 대표발의- 2013.9.21.)¹³³⁾

1) 제안이유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60조는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 이

13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도중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0913, 2014., 1~4면.

133) 박명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13.6., 1~2면.

외에는 원칙적인 수출 또는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밀반출 방지를 위하여 주요 공항 및 항만에 문화재 감정관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문화재감정관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어 문화재청의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에 문화재감정관실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여 문화재 감정관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문화재 밀반출 방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문화재의 불법반출 방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은 문화재감정관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문화재감정관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안 제60조의2 신설).

(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3.10.25.)¹³⁴⁾

1) 제안이유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로서 대한민국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재의 범위를 확대하고, 화재로부터 지정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1. 국외소재문화재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8항)
2. 문화재위원회 조사·심의 안건 범위 조정(안 제8조제1항)

134) 박명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검토보고, 2014.4., 1~2면.

(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동원의원 대표발의- 2014.4.11.)¹³⁵⁾

1) 제안이유

최근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특별전을 계기로 해외 전시를 위한 국보급 문화재의 반출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과 문화재의 장기간 반출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국외 반출 심사 기준이 불명확하고, 현행 시행규칙상 반출 전 3개월인 허가 신청 기준일이 문화재의 국외 반출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기에는 짧은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고려된다.

2) 주요내용

문화재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 기준일을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변경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문화재의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고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문화유산의 해외전시에 따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신설).

제 3 절 중 합

1. 문화유산 세계화를 위한 관련 법제의 비체계성

위에서 열거된 현행 문화유산의 세계화 관련 법률 등은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라는 행정목표 구현에 있어 일응 기여한 바 있음은 분명한 것이다. 다만 문화유산의 개념은 물론 나아가 문화유산의 세계화라고 하는 다소 추상적인 행정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양태를

13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0155, 2014.,1면.

나타내고 있는 행정 실무에 대한 단편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각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으로 인한 법제 간 비체계성의 문제는 상존하는 것이라 하겠다. 즉 단편적 문화교류대상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되고 있어 우리 문화유산의 원활한 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합리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2. 국회 계류법안 주요 쟁점

(1) 문화교류의 활성화 관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교류 활성화에 대한 법률 제정안은 그 추진 주요부처에 따라 문화외교 또는 공공외교를 표방하는 외교통상부(이하 관련 법률안을 문화외교법안이라 한다)와 문화교류의 본질적 의미에 중점을 두고 관련 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관련 법률안을 문화교류법안이라 한다) 간 업무 총괄-조정체계에 관한 이견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제정 법률안은 문화교류내지 문화외교에 관한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 여러 관련 부처 간 유사 또는 중복되는 업무의 비효율성에 대한 공통된 문제인식에 기인하고 있다. 때문에 종국적인 개선방안으로서 는 중앙 부처 또는 민간 차원에서 추진 중인 각종 문화교류 관련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입법화하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입법목적을 실제적으로 구현함에 있어 특히 구현하고자 하는 행정목표의 궁극적 지향점과 이를 추진하는 추진체 등의 권한 등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이함의 기저에는 종래 끊임없이 관련 학계 등을 통하여 제기되고 논의되어져 온 바 있는 문화교류의 논리와 문화외교의 논리 간의 마찰이 그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상이점을 가지는 양 법안에 대하여 ① 국제 문화교류와 문화외교의 개념과 목적, ② 문화교류 사업의 주관 추진 주체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본다.

1) 국제문화교류와 문화외교의 개념과 목적

일반적으로 문화외교는 문화를 수단으로 한 대외적인 영향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활동으로, 상호 문화적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문화 부문의 창의성을 풍부하게 하는 행위인 국제문화교류에 비해 “전략적” 차원의 교류로 이해되고 있다.¹³⁶⁾ 실제 외교부가 발간한 『문화외교 매뉴얼』은 문화외교를 “정부기구 등이 다른 나라의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를 수단으로 하여 자국의 연성권력(soft power)을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¹³⁷⁾

이에 반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문화교류라는 관점은 국가 간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활동으로써 상이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궁극적으로는 자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에 그 주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양자 간에는 간격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국제문화교류와 문화외교는 아래의 표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그 목표, 정책대상, 참여 주체 등에서 서로 상이한 개념으로, 국제문화교류를 문화외교의 범주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이다.¹³⁸⁾

136) 박명수,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박병석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3.6., 6면

137) 박명수,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박병석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3.6., 6면

138) 박명수,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박병석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3.6., 6면

【국제문화교류와 문화외교의 비교¹³⁹⁾】

구분	국제문화교류	문화외교
목표	-새로운 문화적 자극을 통해 문화적 창조력 제고 -상이한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	-국제관계에 있어서 자국 이익의 증대 -국가이미지의 전반적 제고 -자국에 대한 우호세력 확보
참여주체	-정부기관, 공공 문화기관·단체 -민간 문화기관·단체 -개별 예술가 및 전문가	-정부기관 -엘리트예술(명성이 확립된 단체) -지식인 계층
방법	-쌍방향적 -다양한 장르와 유형 -아이디어의 교류, 공동작업	-일방향적 -선별적인 장르와 유형 -문화 분야 ODA 형식

2) 문화교류 사업의 주관 추진주체

정부 각 부처별로 필요에 따라 산발적·중첩적으로 추진되어 사업 성과의 효율성내지 체계성이 저하된다는 평가에 대응, 문화교류 사업의 주관 추진주체의 일원화 요구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조직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에 근거 문화체육관광부가 수행하여야 할 고유사업의 한 형태로서 문화교류사업을 이해하고 있다. 반면, 외교부의 경우 동일하게 정부조직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내용,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139) 박명수,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박병석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3.6., 7면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에 근거 문화외교적 업무로서 국제문화교류는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관련규정】

정부조직법	직 제
<p>정부조직법 제30조(외교부) ① 외교 통상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u>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u>,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p> <p>② 생략</p>	<p>외교통상부 직제 제 3 조(직무) 외교 통상부는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외국과의 통상 및 통상교섭과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u>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u>,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 <u>문화협력</u>, 대외홍보,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재외국민 보호·지원, 국제정세의 조사·분석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p>
<p>정부조직법 제35조(문화체육관광부)</p> <p>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u>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u>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p> <p>② ~ ④ 생략</p>	<p>문화체육관광부 직제 제 3 조(직무)</p> <p>문화체육관광부는 <u>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u>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p>

(2) 세계유산 잠정등재 유산 관리 및 무형문화유산 진흥 관련

1) 세계유산 잠정 등재목록상 유산관리 지원

2003년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11조는 계약국에 대하여 자국 영토 내의 문화재 중에서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잠정목록으로 세계유산위원회에 등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잠정목록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최소 1년 전에 등재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⁴⁰⁾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총 18건의 세계유산 잠정 등록목록으로 설정하고 있다.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문화재 현황: 2014년¹⁴¹⁾】

잠정목록 등재 문화재	등재일	비 고
강진도요지	1994. 9. 1	문화유산
염 전	2010. 1.11	문화유산
대곡천암각화군	2010. 1.11	문화유산
남한산성	2010. 1.11	문화유산
중부내륙산성군	2010. 1.11	문화유산
공주·부여역사유적지구	2010. 1.11	문화유산
익산역사유적지구	2010. 1.11	문화유산
외암마을	2011. 3.11	문화유산
낙안읍성	2011. 3.11	문화유산
한국의 서원	2011.12. 9	문화유산

14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9379, 2014., 9면.

14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9379, 2014., 9면.

제 4 장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 분석

잠정목록 등재 문화재	등재일	비 고
한양도성	2012.11.23	문화유산
김해·함안 가야고분군	2013.12.11	문화유산
고령 지산동 대가야고분군	2013.12.12	문화유산
한국의 전통산사	2013.12.12	문화유산
설악산천연보호구역	1994. 9. 1	자연유산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지	2002. 1.25	자연유산
서남해안 갯벌	2010. 1.11	자연유산
우포늪	2011. 1.11	자연유산

이와 같은 규정과 관련, 법률안에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문화유산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19조(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호)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를 비롯한 인류 문화재의 보존과 문화재의 국외 선양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동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 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 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 문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 문화 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동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등재되지 아니한(등재 직전 단계로서의 잠정등록 문화재) 문화재의 경우에는 이러한 국가적 지원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가차원의 세계유산 등재가 가능한 문화재에 대하여서는 등재 문화재와 동일한 유지 및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무형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의 진흥

조해진의원이 발의한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문화재보호법 제3조 등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문화재에 대한 원형보존 중심의 문화재보호원칙이 가지게 되는 한계, 즉 변화된 문화재의 보호 및 활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향에 대한 상응성 부족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2003년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이행을 위한 꾸준한 국내법제 정비 필요성의 제기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제규범에 상응하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활용체계에 근접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¹⁴²⁾

특히 제정안 제2조(정의)규정에서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상의 무형문화재 개념을 확대하여, “1. 전통적 공연·예술, 2.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3.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4. 구전 전통 및 표현, 5.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6.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7.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를 무형문화유산의 범주내 포함하고 있다. 이는 협약의 정의규정에 상응하고자 하는 입법고려로 판단된다. 또한 제정안 제13조(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유산의 지정)에서는 협약 제17조에 따른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 목록”제도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질 수 있다.

142) 박명수,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조해진의원 대표발의) 검토 보고서, 2013.6., 11면 (각주 5).- “동 협약 제3장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국내적 보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제11조: 자국 영토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
- 제12조: 자국 영토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목록 작성 및 갱신
- 제13조: 자국 영토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개발, 증진을 위한 조치
- 제14조: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사회의 인식, 존중 및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 등
- 제15조: 공동체, 집단, 관련 비정부기구의 참여를 통한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17조(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 목록)

1.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작성·갱신 및 공표하고 관련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유산을 목록에 등재한다.
2. 위원회는 이 목록의 작성·갱신 및 공표의 기준을 작성하여 승인을 위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3. 극도의 긴급 상황(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총회가 승인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다)에서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유산을 위 제1항에 언급된 목록에 등재할 수 있다.”¹⁴³⁾

(3) 해외문화재 환수-활용 관련

2014년 10월 현재 우리 문화재는 20개국에 걸쳐 156,160점이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⁴⁴⁾ 이와 같은 해외소재 우리문화재의 환수내지 활용에 관하여 위에서의 국회 제출입법안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외문화재의 법적 개념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 제출안은 기존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8항 상 규정되고 있는 국외소재문화재의 개념이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문제시 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동산 문화재에 한하여 해석될 소지가 있는 것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143) 박명수, 문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조해진의원 대표발의) 검토 보고서, 2013.6., 36면(각주 24)

144) 국외문화재재단 홈페이지-

<http://www.overseaschf.or.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1002002>

【해외문화재 현황¹⁴⁵⁾】

구분	조사 현황	비고
동산문화재	약 156,160점 (국립문화재연구소)	동산
역사유적지	약 993개소 (국립문화재연구소)	부동산
독립운동사적지	약 788개소 (국가보훈처)	
한국전쟁참전 기념물	약 233개 (국가보훈처)	
국외 무형문화재 전승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즈베키스탄(2011) : 봉산탈춤, 매듭 · 키르기스스탄(2012) : 단소 · 무용 · 사물놀이 · 카자흐스탄(2013) : 「고려극장」과 협력 등 	무형 문화재

즉 위의 현황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동산문화재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우리문화재가 해외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문화재보호법상 관련 규정에 의한다면 이와 같은 유형의 문화재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환수는 물론 조사와 지원 등의 법적 근거마저 미약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 제출안에 있어서는 이러한 국외문화재의 법적 개념을, “국외소재문화재”란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재의 불법 해외반출에 대한 개선사안으로서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서는 도난문화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보호측면에 있어 국가지정문화재의 심사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고 시도지정문화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6개월 이내로 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145) 박명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검토보고, 2014.4.,4면.

이와 같은 비지정문화재의 해외반출에 대한 개선안으로서 행정 실무적 차원에 있어 유승희 의원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문화재보호법 제60조(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의 입법목적보다 효율적으로 작용토록하기 위하여 현재 법적 근거 없이 문화재청이 문화재의 불법적 국외반출을 막기 위하여 주요 공항 및 항만 등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문화재감정관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향후 이에 대한 지원과 효율적 업무추진을 제고하자는 의도인 것이다.

【신구조문 대조표¹⁴⁶⁾】

현 행	개정안
<u><신 설></u>	<p><u>제60조의2(문화재감정관실의 설치)</u></p> <p>① 문화재의 불법반출 방지 및 국외 반출 동산에 대한 문화재 감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은 주요 공항, 항만, 국제우편물을 취급하는 곳에 문화재감정관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문화재감정관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해외소재 문화재의 활용적 측면과 관련하여 해외전시를 위하여 반출되는 문화재에 대한 국외반출 심사기준의 명확화에 관하여서는 강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서는 현행 반출 전 3개월인 허가 신청 기준일이 문화재의 국외반출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기에는 짧다는 문제점에 기인하여 이를 5개월로 변경하고 반출연장을 위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고시 하자는 것이다.

146) 박명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13.6., 3면.

제 5 장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위한 입법 정책적 제언

제 1 절 문화유산 세계화를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지속적 정비추진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재 관련 법률로는 문화재보호법이 기본법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재보호기금법 등이 있다. 문화재행정의 근간이 되는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 1월에 제정되었고, 1982년 12월에 전문 개정되었으며, 이외에도 40여 회의 부분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문화유산의 세계화 전개과정에서 문화재보호법은 관련 국제협약에 대한 국내 이행법률로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개정과 함께 해외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에 관한 내용을 별개의 장으로 구성·적용코저 하고 있다. 생각건대 이와 같은 입법적 전개는 기존의 문화재와 세계유산의 법적 체계를 별도로 구축하는 방안을 통한 기존의 문화재 관련 법규와는 별도로 세계유산에 대한 법규를 제정함으로써 법규 정비를 통한 명확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과 기존의 문화재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세계유산을 포함하도록 하여 문화재 관련 법규가 통일적으로 체계화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형량과정에서 후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

그러나 동법 제2조(정의) 및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원형보존’원칙의 견지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문화재의 개념에 따른 범주의 확대와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에 미흡하게 작용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한 세계유산 등재 관련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제반적 규정 등이 절차적 요소를 중요시 한 나머지 정작 보존-관리적 측면을 다소 소홀히 규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특히 세계유산 등재 또는 등재를 위한 잠정 문화대의 관리체계의 미흡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리고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국제협약의 이행과 세계적으로 문화재 약탈 피해가 많은 국가 중 하나로서 국외소재 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입법적 대응책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는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규율을 주로 담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 성격에 따른 것으로써 문화재의 ‘보호’가 아닌 문화재의 ‘환수’에 관해서는 일반사법이 주된 적용영역으로써 기능하고 있으며, 또한 이에는 사후적 환수에 중점을 두고 다자간 체결된 관련 국제협약 가입여부에 대한 국가차원의 현행 법제도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 고려된다.

이러한 논의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 완전한 규범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규범의 가입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반환 및 환수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하나 아직 이러한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소재 문화유산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반환·환수·기증 등에 관련된 방법과 절차를 제도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를 가동할 수 있는 인적 자원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¹⁴⁷⁾

아울러 국외소재 문화재의 활용적 측면과 관련하여 문제시 되는 국외소재문화재의 조사와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래 표에서 보여 지고 있는 바와 같은 지속적

147) 이덕인, 문화유산의 불법유출 방지와 보호규범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아법학 제54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546면.

인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을 사전적으로 막기 위한 도난 및 밀반출 등에 관한 제반적 관련 규정에 관하여서도 향후 입법형식의 선택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고려된다.

【문화재도난 및 밀반출 현황¹⁴⁸⁾】

구 분 (’85년 이후)		지정문화재		비지정		계	
		건 수	점 수	건 수	점 수	건 수	점 수
문화재 도난·회수	도난	156	2,100	511	25,279	667	27,379
	회수	65	876	117	3,829	182	4,705

연 도	불법 밀반출 적발건수	문화재 명	수 량 (점)	피의자 (명)
1992	7	청자완 등	29	9
1999	1	토기 등	11	3
2001	2	분청사기 등	15	13
2003	1	청화백자 등	66	5
2009	1	쇳대 등	153	1
2010	1	추사글씨 등	136	1
2012	1	어정주서백선 등	74	22
계	14		484	54

**제 2 절 문화유산의 세계화 효율성 제고를 위한
문화교류사업 추진주체 일원화**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위한 문화교류 사업은 그 성격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추진주체가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 실무적 현상은 문화유산의 세계화라고 하는 추상적 개

148) 박명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회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13.6., 9면.

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질 수 있다. 즉 우리 고유의 문화재에 대한 국외 상이한 문화를 가진 타국에로의 교류는 그 추진 주체의 지향하는 행정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된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 간 문화교류 사업에 대한 총괄·조정을 위한 수행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법률안 등의 주요내용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근원적 차이에 따라 종래 다양한 문화교류 관련 사업 추진주체의 유사-중복적 업무 진행으로 인한 사업의 효율성 저하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일원화된 사업추진체계의 구축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해외소재 우리문화재 환수를 위한 추진체계에 있어 나타나고 있는 정부 내 환수업무 분장내지 전문화된 전담 조직이 법제적으로 명확하게 입법화되지 않아 문제시 된 바 있다.¹⁴⁹⁾

최근 이러한 업무분장내지 업무추진의 일원화를 위한 논의는 관계부처 간 지속적 협의를 통하여 그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에 관한 논의에는 국제적·범정부적 협의가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49) 주효진/노지영, 문화재 교류협력 기능강화와 세계유산관리 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 정부와 정책 제4권(2호),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12., 42면. - “외규장각 도서 등 국외문화재 환수문제에 있어서 국가 간의 협상채널이 외교부로 단일화 되어있어 문화재청이 독자적으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환수정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아울러 국외소재 우리문화재의 환수·활용을 위한 정책 총괄·조정기구가 부재하다. 즉, 해외소재 우리문화재의 보호 및 환수 등에 대한 업무는 정부(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박물관, 외교통상부), 관련기관(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국제교류재단, 민간 환수단체)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제 3 절 세계문화 다양성을 고려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국제간 교류에 있어 정부가 아닌 민간기구 등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세계화의 현상 중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¹⁵⁰⁾ 특히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상이한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세계화 과정에 있어 무엇보다 새로이 부각되는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부주도의 문화교류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간의 참여이다. 문화교류 사업에 있어서의 민관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은 아래와 같이 선행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통하여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국제문화교류 수행방식의 바람직한 형태¹⁵¹⁾】

응답 내용	2007년		2012년	
	빈도 (N)	유효비 (%)	빈도 (N)	유효비 (%)
민간부문이 주체가 되어 민간의 역량에 의해 바람직하다	11	4.3	3	1.7
민간부문이 주도하되 우선적으로는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 담보되는 것이 필요하다	80	31.6	68	37.8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치 (governance) 체제가 적합하다	143	56.5	93	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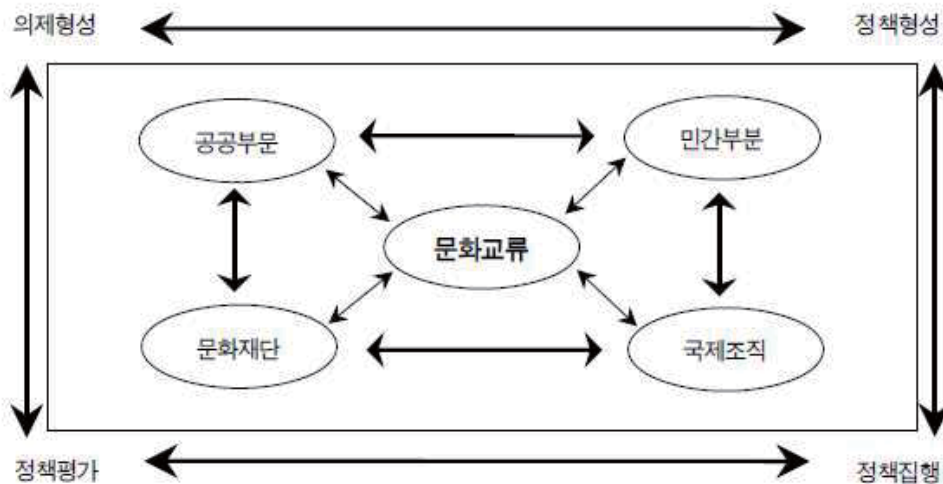
150) 박태규, 국제 문화교류의 새로운 방향모색 - NGO의 문화교류활동을 중심으로 -, 문화정책논총 제13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1., 83면.- NGO의 문화교류활동의 필요성에 관하여 저자는 동 문헌 85~ 87면에 걸쳐, “정부위주 문화교류사업의 한계, 문화교류사업 추진주체 간 상호이익 실현, 문화교류사업의 다양성 유지, 문화교류의 전문성 및 문화 정체성 정립” 등을 들고 있다.

151) 정정숙, 국제문화교류 진흥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25면

응답 내용	2007년		2012년	
	빈도 (N)	유효비 (%)	빈도 (N)	유효비 (%)
국익의 관점에서 국가운영 전략의 일부로서 기획되어야 한다	19	7.5	16	8.9
무응답	1			
전 체	254	100	180	100

또한 보다 효용성 있는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의 각 관련 부서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단체장, 관련 공무원,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전문가와 시민문화단체, 관련 제도를 의결하는 의회와 지방의회 등이 국제문화교류 정책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¹⁵²⁾

【문화유산 세계화 관련 거버넌스 틀¹⁵³⁾】



152) 신두섭, 한류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류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경제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문화경제학회, 2012., 117~ 118면.

153) 이종열, 문화교류의 거버넌스 접근: 한류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7권(4호), 서울행정학회, 2007., 128면.

이러한 협력체계의 적용에 대하여 과거 문화재청은 국민이 문화재보존·관리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근거하여 2007년 3월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이 설립되어 보전재산 매입, 활용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새로이 문화유산분야의 사회적 기업 설립을 검토·추진 중에 있다.¹⁵⁴⁾

나아가 민관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은 남북문화유산 교류에 있어서도 매우 효율적인 기체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남과 북의 문화재 전문가와 관련 부처는 해외로 유출된 우리의 민족문화유산의 실태를 공동으로 조사하고 그 반환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힘을 모을 수 있다. 생각건대 남북은 불법적으로 해외에 반출된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공동의 반환위원회를 구성하여 유네스코 등과 같은 국제적 단체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문화유산의 조속한 반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¹⁵⁵⁾

제 4 절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제고

문화유산의 세계화 과정을 거치면서 종래 우리 고유문화유산의 원천으로서의 지역문화의 특색이 많이 퇴색하고 있다. 이는 표준화를 지향하는 서구 취향 위주의 글로벌 문화가 확산되면서 지역문화와의 충돌이 발생했고, 지역의 문화지형에서 전통적인 지역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¹⁵⁶⁾ 아울러 행정실무 차원에 있어서

154) 송인범, 우리나라 문화재정책의 현황과 과제, 백제문화 제40집,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09., 83면.

155) 이춘길, 남북한 문화유산 교류의 방도와 전망, 사회과학연구 제14권, 안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171-172면.

156) 송준, 세계화 대응전략과 지역문화의 중요성, 한국민속학 제58집, 한국민속학회, 2013., 203면.

도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재정적 측면에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행정 실무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와 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관리를 관장하고 있으나 아래의 표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조직과 실무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지자체 문화재 관리 인력현황(총괄표)¹⁵⁷⁾】

(단위: 명)

구 분	계	계약직	별정직	행정·기술직							학예직	기능직	비고
				계	3급	4급	5급	6급	7-9급				
광역 단체 (17)	소계	170.5	4.5	8.0	123.0	2.4	7.8	27.0	41.8	44.0	26.0	9.0	세종시 포함
	전담	163.0	4.0	8.0	116.0	0.0	4.0	27.0	41.0	44.0	26.0	9.0	
	겸임	7.5	0.5	0.0	7.0	2.4	3.8	0.0	0.8	0.0	0.0	0.0	
기초 단체 (229)	계	732.3	45.6	30.3	509.2	0.0	2.2	51.1	186.7	269.2	81.5	65.7	
	전담	578.0	45.0	28.0	369.0	0.0	0.0	7.0	137.0	225.0	75.0	61.0	
	겸임	154.3	0.6	2.3	140.2	0.0	2.2	44.1	49.7	44.2	6.5	4.7	
계	902.8	50.1	38.3	632.2	2.4	10	78.1	228.5	313.2	107.5	74.7		

더욱이 부족한 조직과 인력 기반에 더하여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예술과 관광, 체육 등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더욱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157)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주요업무 통계자료집, 문화재청, 2012. 12. 31., 7면.

【지자체 문화재단담 조직현황(과단위)¹⁵⁸⁾】

구 분	광역단체		기초단체		비 고
	수	인 원 (명)	수	인 원 (명)	
소	0	0	2	27	부여군 고도문화사업소 연천군 선사문화관리사업소
과(팀)	4	77	4	89	
합계	4	77	6	116	*광역(4) : 서울, 인천, 경기, 경북 *기초(6): 공주, 부여, 익산, 경주, 김해, 연천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하여 프랑스의 문화재 행정체계는 건축문화유산국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중앙정부 중 건축문화유산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부처는 국토개발환경부, 건설교통부 등이다 지방정부에서는 지역문화국, 지역환경국, 문화재사적위원회 등과 연계되어 있다¹⁵⁹⁾. 특히 지방정부차원의 조직으로서 레지옹, 데빠르트망, 꼬뮌이 있으며, 레지옹에는 국가 파견 기관인 레지옹 문화사무국이 있어 지역문화계획의 전반과 문화예술교육, 문화행정을 포함한 전 분야에 대한 지역 행정을 지원받는 등 국가와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여 현대미술과 지역박물관 소장품 확대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프랑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빠르트망의 경우, 지역 도서관과 박물관의 조성 및 재정 지원, 고문서 보전과 관리, 고문서 관리국에 대한 재정지원 사무

158)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주요업무 통계자료집, 문화재청, 2012. 12. 31., 7면.

159) 주효진/노지영, 문화재 교류협력 기능강화와 세계유산관리 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 정부와 정책 제4권(2호),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12., 37~ 38면.

이다. 그리고 데빠르트망은 예술활동을 조직, 개최하며, 문화유산 보존 정책을 수립하고, 농촌지역의 문화활동을 장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¹⁶⁰⁾

이와 같은 프랑스의 경우에 비추어 우리나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과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단편적 역할분담과 분권화를 추진함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 문화유산의 문화교류 사업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은 물론 무엇보다 지방재정 강화 방안의 모색과 행정 실무적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어 지는 것이다.

160) 주효진/노지영, 문화재 교류협력 기능강화와 세계유산관리 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 정부와 정책 제4권(2호),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12., 49~ 52면.

참고 문헌

<국내문헌>

- 고정민, 국제간 경제협력·통합에서 문화의 역할, 인문콘텐츠 제28호, 인문콘텐츠학회, 2013.
- _____,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한국문화원 법적 위상 재정립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 공공외교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안(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599, 2013.
- 공공외교의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안(李宰榮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209, 2012.
- 곽재성, 유네스코 ‘문화와 발전’ 담론과 문화유산 ODA의 중요성,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ODA의 방향과 전략(유네스코 문화유산 개도국 협력 전략세미나 자료), 문화재청-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박병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7350, 2013.
-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법률안(길정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84, 2012.
- 국제문화교류진흥법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309, 2012
- 김정순,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향유를 위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 김창규, 문화재보호법 총론, 동방문화사, 2011.
- _____, 문화재정책 및 법제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법과 정책연구 10권 2호, 한국법정책학회, 2010.

참 고 문 헌

김형민, 한국문화의 세계화 전략방안, 전북대학교 국제문화교류심포지엄 자료, 전북대학교 국제문화교류연구소, 2011.

김혜인, 해외박물관의 한국문화재 활용 활성화를 위한 쟁점과 활성화 방향, 예술경영연구 제29집, 201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도종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0913, 201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9379, 201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0155, 201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9997, 2014.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주요업무 통계자료집, 문화재청, 2012.

문화재청, 2014년도 주요업무 현황, 2014.

문화체육관광부,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 정책자료집 2 문화예술, 2013,

박계리, 동아시아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와 유네스코 협약, 미술사논단 통권34호, 한국미술연구소, 2012.

박명수,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박병석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13.

_____,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법률안(길정우의원 대표발의) 검토 보고서, 2013.12.

_____,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조해진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13.

- _____,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13.
- _____,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검토보고, 2014.
- 박성진,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통한 남북 문화유산 교류협력 방안, 2014.
- 박태규, 국제 문화교류의 새로운 방향모색 - NGO의 문화교류활동을 중심으로 -, 문화정책논총 제13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1.
- 박하영,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훈련 워크숍,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ODA의 방향과 전략,
- 서순복/권오철, 지방자치단체 문화재행정의 진단과 및 대안 모색, 『지방정부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지방정부학회, 2008.
- 손경한, 문화재환수협약의 개요와 한국의 대응방안, 국제사법연구 제 15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09,
- 송인범, 우리나라 문화재정책의 현황과 과제, 백제문화 제40집,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09.
- 송준, 세계화 대응전략과 지역문화의 중요성, 한국민속학 제58집, 한국민속학회, 2013.
- 송호영/김지현, 문화재환수관련 국내외 규범 및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970년 UNESCO협약과 1995년 UNIDROIT협약을 중심으로, 유네스코정책연구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 신두섭, 한류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류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경제연구 제15권 2호, 한국문화경제학회, 2012.
- 우성기, 문화재의 지속가능한 보호를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 행정법연구 제31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1.

참고문헌

- 유재은, 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국제협력(ACPCS) 사업의 현황과 전망,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ODA의 방향과 전략(유네스코 문화유산 개도국 협력 전략세미나 자료), 문화재청-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
- 이근관, 동아시아지역의 문화재 보호 및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법적 고찰, 서울대학교법학 제44권(3호) 통권 제128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 이덕인, 문화유산의 불법유출 방지와 보호규범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아법학 제54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_____, 불법유출 문화유산에 대한 형사법적 보호, 비교형사법연구 제 13권 제2호, 비교형사법연구, 2010.
- _____, 불법유출 문화유산에 대한 형사법적 보호, 비교형사법연구 제 13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1.
- 이영진, 세계기록유산의 등록과 보존을 위한 법적 문제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18권(1호), 충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1.
- 이종열, 문화교류의 거버넌스 접근: 한류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7권(4호), 서울행정학회, 2007.
- 이재경, 불법반출문화재의 반환청구 - 반환청구의 요건과 절차 -, 국제사법연구 제15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09.
- 이철남,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과 저작권 관리방향 -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사례를 중심으로 -, 강원법학 제40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
- 이춘길, 남북한 문화유산 교류의 방도와 전망, 사회과학연구 제14권, 안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 임승빈, 문화 및 문화재 행정의 개혁의 원칙과 방향, 한국행정학회 하계 학술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12.
- 정갑영, 세계화의 의미와 문화정책의 기본방향, 문화정책논총 제6집, 한국관광문화연구원, 1994.
- 정상우/정필운, 국제협약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호 법제도의 과제, 법과 정책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1.
- 정정숙, 국제문화교류 진흥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 정하영, 문화유산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개발도상국 세계유산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유산분야 ODA 사업 정향을 중심으로, 문화재관리학 통권 제11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14.
- 주효진/노지영, 문화재 교류협력 기능강화와 세계유산관리 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 정부와 정책 제4권 제2호,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12.
- 하문식, 북한의 문화재관리와 남북 교류, 정신문화연구 제30권 제1호 통권106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소장기관 거점지정 및 육성 방안 연구, 문화재청, 2012.
- 홍기원,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문화외교의 논쟁적 요소들에 대한 고찰, 예술경영연구 제18집, 한국예술경영학회, 2011.

<인터넷자료>

<http://www.chf.or.kr/c3/sub2.jsp>

http://www.chf.or.kr/c3/sub2_2.jsp

참 고 문 헌

<http://www.overseaschf.or.kr/site/main/index001>

<http://www.overseaschf.or.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001002002>

<http://www.koica.go.kr/>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query=%EB%AC%B8%ED%99%94%EC%9E%AC%EB%B3%B4%ED%98%B8%EB%B2%95&x=0&y=0#liBgcolor1>